

정책연구 2012-18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의 역할

2012 Global Leader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선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7
제2장 협동조합의 개념 및 정책현황 분석	9
제1절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11
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영역	11
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개념적 관계	16
제2절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19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정체성	19
2. 협동조합의 유형	23
제3절 기존 협동조합 정책 현황	27
1. 기존 협동조합 제도 및 실태	27
2.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한계	32
제4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기대효과	32
1. 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기본법의 주요내용	34
3. 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40



제3장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	43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45
1. 분석의 목표	45
2. 분석 대상	45
제2절 협동조합의 사례분석	47
1. 사회서비스영역의 협동조합	47
2. 근로자협동조합	55
3. 일반 경제사회영역의 협동조합	57
4. 협동조합 연합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59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64
1. 협동조합 운영시 실수요자 중심의 상품공급과 가격책정	64
2. 협동조합의 상호연대 분위기는 커뮤니티 복원에 기여	64
3. 협동조합-협동조합 간 연대, 협동조합-지자체 간 협력으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65
제4장 협동조합의 활성화방안	67
제1절 기본방향	69
1.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확산시키는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69
2. 경제·사회적 취약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공생발전 도모	69





- 3.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중심의
지원체계 70
- 4.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원체계 수립 .. 70
- 제2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 · 71
 - 1. 역할 정립의 틀 71
 - 2. 행정안전부 관련 협동조합의 영역 73
 - 3. 행정안전부의 협동조합정책 추진체계 구축 77
 - 4. 마을기업 등 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105
- 제3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 121
 - 1.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지원 추진체계 정비 ... 121
 - 2.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 124
 - 3. 협동조합의 내부 역량강화 방안 129
 - 4.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134
 - 5.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자금지원 방안 137
 - 6. 시도별 협동조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141

- 참고문헌142**
- 부록 1. 중앙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147**
- 부록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등록대장149**
- 부록 3.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증 및 등록대장150**

- <표 2-1>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현황 27
- <표 2-2> 협동조합 유사단체 비교 31
- <표 2-3> 협동조합과 타 유형의 조직간 비교 35
- <표 2-4>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36
- <표 2-5> 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42
- <표 3-1> 의료생협의 항생제 처방률 48
- <표 3-2> 협동조합 관련 4대 분야의 성공사례 65
- <표 4-1> 비영리법인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79
- <표 4-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대장(서식) 81
- <표 4-3> 중앙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85
- <표 4-4>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87
- <표 4-5> 2012년 공익사업의 내용 90
- <표 4-6> 유사 단체의 등록·관리시스템 비교 95
- <표 4-7> 정책추진시스템의 유형 및 장단점
: 분산형 vs 통합형 99
- <표 4-8> 지역별 마을기업 현황(2012년 현재) 107
- <표 4-9>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2012년) 108
- <표 4-10> 부처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 현황 ... 109
- <표 4-11> 마을기업의 조직유형 112
- <표 4-12> 협동 마을기업조합형 대상분야와
사업(예시) 118
- <표 4-13> 마을기업 유형분류의 개선(안) 120





<표 4-14> 강원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현황
(2011년 12월) 126

<표 4-15>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5가지 형태 127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과제 수행도	8
[그림 2-1] 사회적 경제의 배경	13
[그림 2-2] Pearce의 세 가지 경제모델	14
[그림 2-3] 사회적 경제의 영역	15
[그림 2-4] 사회적 경제부문의 위상	16
[그림 2-5]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	34
[그림 3-1] 원주 사회적경제의 조직화 과정	60
[그림 3-2] 원주시 사회적경제블럭화 사업 참여조직 및 관계망	61
[그림 3-3] 협동기금 운용 메커니즘	62
[그림 4-1]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본방향	71
[그림 4-2]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추진체계	72
[그림 4-3] 비영리법인 조직관리시스템	83
[그림 4-4] 비영리민간단체 조직관리시스템	88
[그림 4-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일정	91
[그림 4-6] 법인 설립의 원칙	92
[그림 4-7] 사회적 협동조합의 허가관리권자	97
[그림 4-8] 전국 단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시스템(현행)	98
[그림 4-9]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관리시스템(안)	100
[그림 4-10]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관리시스템	103
[그림 4-11]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성격	117
[그림 4-12] 시·도 소관의 비영리법인 등록관리시스템 ..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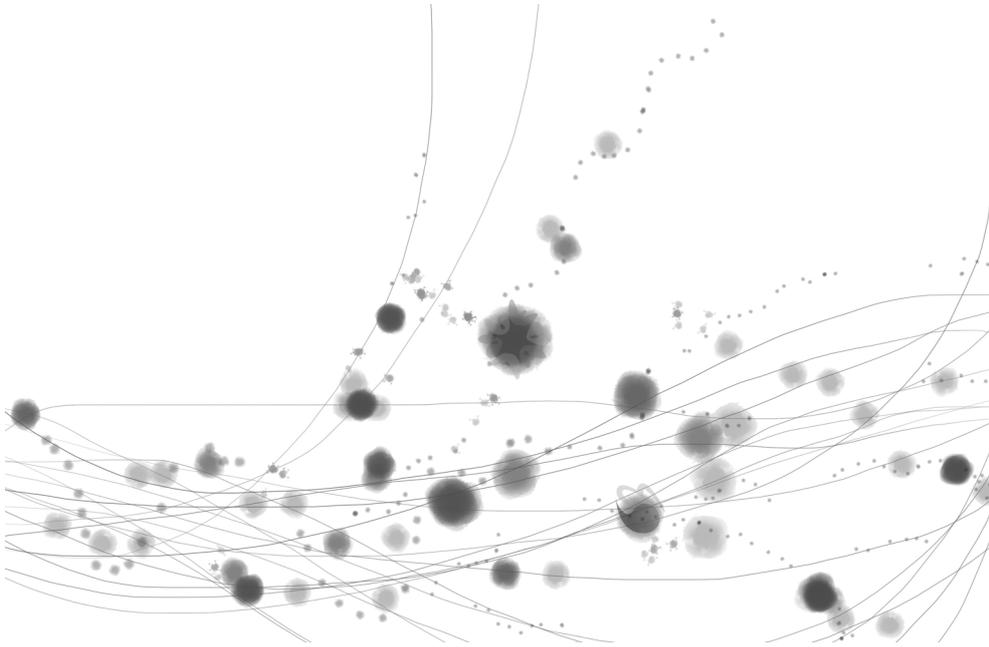




[그림 4-13] 시·도 소관의 협동조합 등록관리시스템 ··· 123
[그림 4-14]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도 ········· 128
[그림 4-15]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기능설계 ····· 136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모델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UN은 136호 결의문 “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을 통하여 각국 정부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2011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생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핵심전략으로 상정하면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그 일환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에 제정 공포되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기본법은 2012년 12월 1일에 시행 예정)
 - 민주당 손학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발의 및 시민단체 입법청원 등 관련 법안 제기
 - 기본법 제정단계에서 2011년 11월 11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협동조합연대회의, 29개 단체)가 발족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법제로는 회사설립이 어려운 생산자, 소비자,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들이 법인격이 부여되는 “협동조합”으로

설립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과거 국내에서 협동조합 관련 일반법이 부재하고 8개 개별법만 존재하여 협동조합으로 설립가능한 분야가 제한되었음
- 8개 개별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임

-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하고 협동조합 도입의 효과나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주도해온 기획재정부와 관계 중앙부처 간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과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재 협동조합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및 지자체의 역할을 정립
- 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연구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활동영역과 사회적 효과
 - 협동조합기본법 하에서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의 역할(행안부 관련 협동조합 영역, 협동조합 등록관리체계)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역할(협동조합 등록관리체계, 교육홍보, 네트워킹 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협동조합의 유형 및 사회적 효과

- 협동조합의 등장배경, 개념 및 특성, 그리고 효과 및 다른 조직들(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등)과의 차별성을 논의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출자규모와 무관),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임
- 협동조합 관련 정책지원체계 분석
 -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언급하는 협동조합 관련 조직유형(일반적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구체적인 설립요건 및 운영규칙(적립금, 잉여금, 배당 등), 협동조합정책 추진체계(기본계획, 재원조달,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과의 관계 등) 등을 검토
 - 이를 통하여 국내 정책환경에서 마을기업 등의 운신의 폭을 가늠하고 정책수립에 활용

나. 국내 협동조합의 분석

-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활동 특성과 사회적효과와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
- 국내 개별사례 분석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간 연합체 사례인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방안 모색에 활용하도록 함

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1) 기본방향

- 협동조합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 이를 위하여 직접지원(재정지원 등) 보다는 간접지원방식을 모색
-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및 관련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 하에 지원정책 추진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 모색

- 행안부 소관 협동조합 영역 발굴
 -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고유 조직미션 내에서 발생하거나 활성화시켜야 할 협동조합의 영역을 발굴
- 행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유사 제도를 검토하여 인허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 재위임)와 중앙정부 간 역할 분담 추진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 협동조합의 인허가 및 관리, 지원 등을 위한 협동조합정책 추진체계의 검토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운영 또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검토
 -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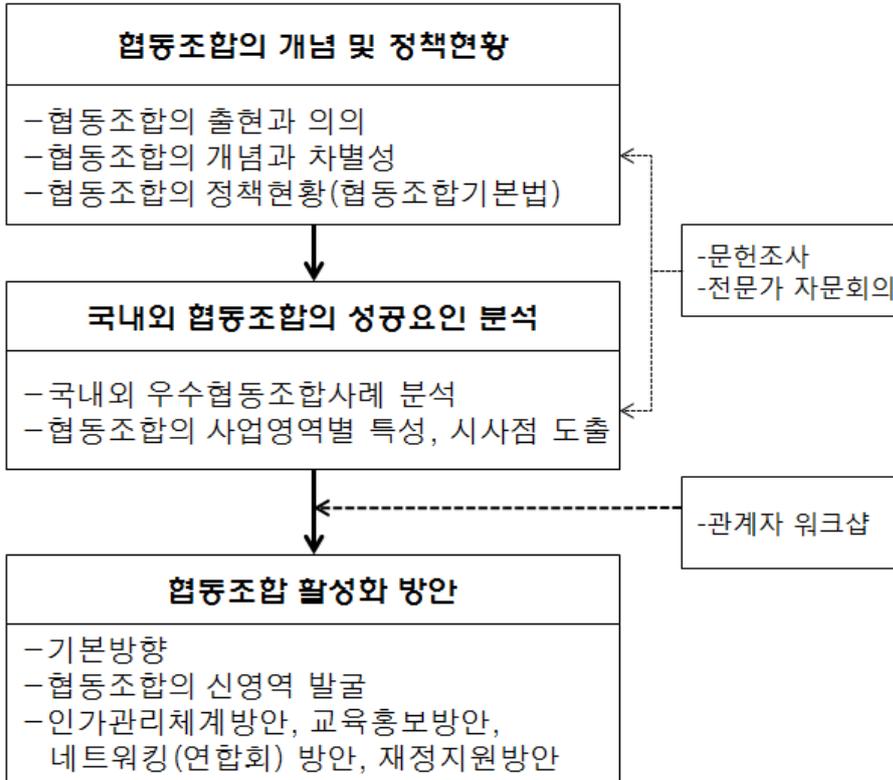
가. 문헌 검토

- 협동조합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국내외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에 대한 문헌 검토

나.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숍

- 협동조합 성공사례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
- 협동조합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그림 1-1] 과제 수행도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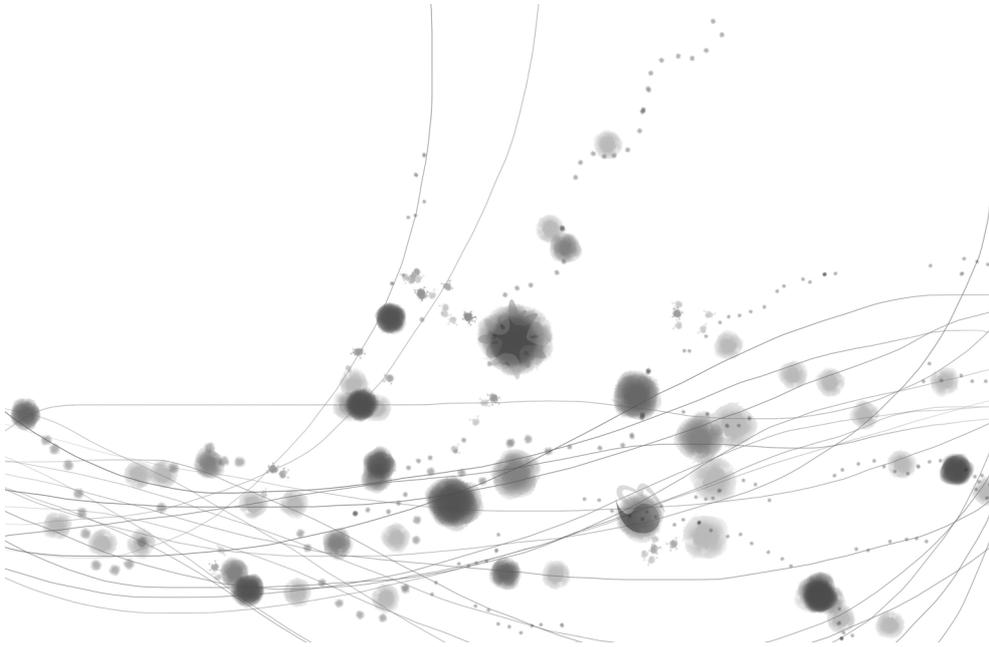
협동조합의 개념 및 정책현황 분석

제1절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제2절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제3절 기존 협동조합 정책 현황

제4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기대효과



제 2 장

협동조합의 개념 및 정책현황
분석

제1절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영역

가. 사회적 경제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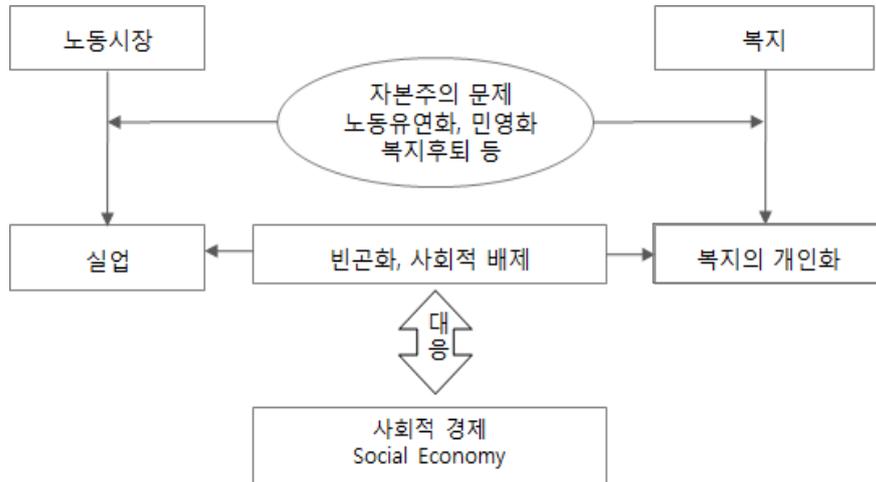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대안경제의 형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19세기까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 재구조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발생 및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노대명, 2007; 최용주, 2009)
 - 80년대 초 유럽에서 사회복지모델이 재정적자의 누적, 경제침체, 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복합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크게 변질되기 시작
 -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확산으로 탈규제, 감세, 재정긴축이 본격화되고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던 공적 기구와 제도들을 민영화, 시장화하는 정책들이 추진
 - 신자유주의 이념과 공급자우선의 정책들로 인하여 자원 및 소득의 양극화, 불균등발전, 실업 증가가 나타나면서 시장으로부터의 접근을 상실한 계층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모색
- 과거 사회적 경제의 분야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으나, 세계화로 인한 조세 면책의 확대, 복지 수혜자의 급증 등

으로 국가가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정부와 기업이 관할 영역을 공유하는 혼합통치 현상이 발생

- 사회적 경제는 개별 국가 및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형태와 특성을 갖고 발달해 왔음(Jeanter and Poulnot, 2007))
 - 서구 자본주의 국가 : 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축소가 진행되면서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민영화전략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부활
 - 저발전국가 : 전통적인 사적 안전망이 급속하게 해체되면서 공적 사회안전망이 공백을 메우지 못함에 따라 시민사회 스스로 자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성장
-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로 발생한 취약계층의 빈곤 해소와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정책에 도입)
 - 사회적 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1)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대표적 시책이며 그밖에 문화부(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공동체), 여성가족부(농촌여성 일자리지원사업) 등의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김선기, 2011: 29-34)

[그림 2-1] 사회적 경제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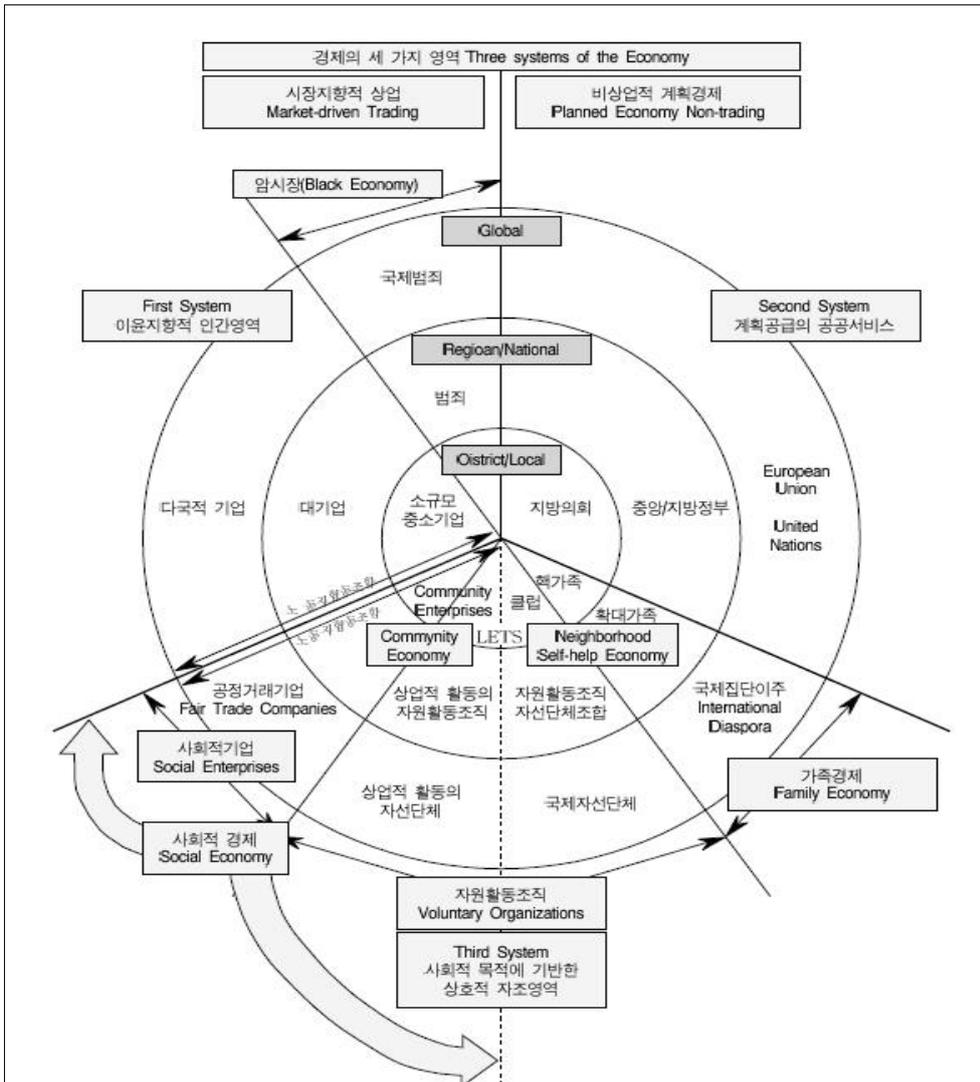
출처 : 장원봉(2006), p.64

나.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영역

-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이념과 실천을 통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실제 사회적 경제와 연대경제(Economic Solidaire), 제3섹터(The Third Sector), 비영리 섹터(Non Profit Sector)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
- 사회적 경제의 개념
 -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제활동(장원봉, 2006)
 - 국가 또는 시장기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동체적, 지역적 그리고 수요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제도적 대안(최용

- 주, 2009: 124)
-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이 포함(EU)

[그림 2-2] Pearce의 세 가지 경제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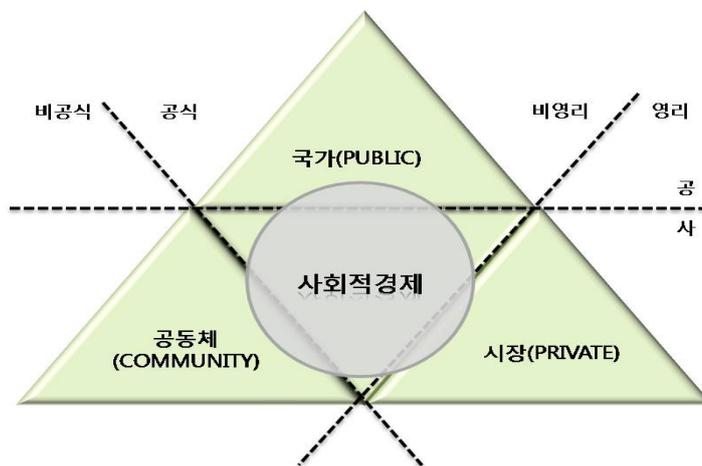


출처 : Pearce(2003), p.25, 장원봉(2006), p.38에서 재인용

다. 사회적 경제의 위상과 영역

-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천하는 자발적·호혜적 참여경제방식
 - 국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 정치경제학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제3의 길”로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며 자조(self help), 상호부조(mutual),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에 기반한 경제영역(Pearce, 2003; Doherty et.al., 2009: 5-9)
-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인 것(social)”의 의미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세 가지 영역인 국가, 시장, 공동체의 중간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함(Defourny and Pestoff, 2008)
 - 사회적 경제는 공식과 비공식, 영리와 비영리, 공과 사의 경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국가, 공동체가 새로운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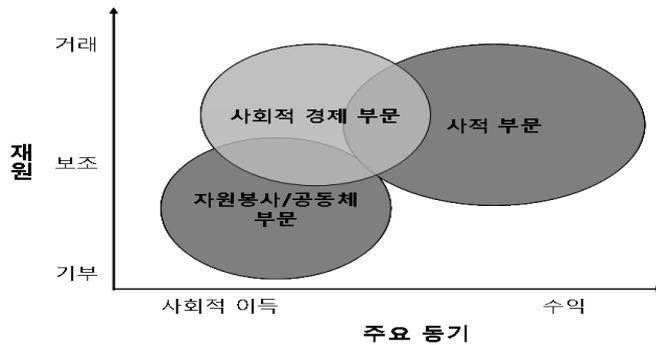
[그림 2-3] 사회적 경제의 영역



출처: Defourny and Pestoff(2008), p.6

- 사회적 경제는 자원조달과 주요 동기의 측면에서 사적 부문(private sector)과 자원봉사/공동체(voluntary/community sector)의 중간위치에 존재(Doherty, et.al., 2009)

[그림 2-4] 사회적 경제부문의 위상



출처 : Bob Doherty, et.al.(2009), p.27

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개념적 관계

가. 법적/제도적 접근

-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협동조합형 기업, 상호조직, 결사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Borzaga and Defourny, 2001: 4-6)
 -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며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조직방식임
 -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곤란할 정도로 19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associationism)와 밀접하게 연관(송두범·김종수, 2012: 10)
 - 사회적 경제는 산업자본주의 초기 협동조합, 결사체 등 시민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자활조직을 배경으로 발생하였고, 협동조합은 경

제적 지위가 유사한 단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교섭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시장조직의 형태로 발전(최용주, 2009)

① 협동조합(co-operative-style enterprises)

- 19세기 중반부터 세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적인 형태
-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 소매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발달
-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경쟁력으로 인하여 수익극대화를 비판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
- 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형 사회복지모델의 퇴조와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게 강조
- 특히 남부유럽(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경우 공공부문을 대신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확산

② 상조조직(mutual-type organizations)

- 상조조직은 회원이 이용자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발전(최용주, 2009: 132)
-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조조직은 사회안전망의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다른 협동조합이 시장교섭력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시장조직의 형태로 발전한 것과 달리 상조조직은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차이
- 남부유럽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공제, 보험 등을 취급하는 상조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크레딧, 탁아소, 노인보호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
- 최근에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

③ 결사체(associations)

- 결사체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단체(advocacy organization)를 일컫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
- 실제로 국가마다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비영리기관, 자원봉사조직, 비정부기관 등)

나. 규범적 접근

- 사회적 경제를 보는 관점이 조직의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운영원리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서 수익보다는 구성원 또는 공동체 우선의 목표, 독립적 경영,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소득분배에서 사람과 노동의 우월성 등 네 가지 원리가 중요
 - 사회적 경제의 네가지 운영원리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개념적으로 일맥상통
 - 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의 부활은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① 수익보다는 구성원 또는 공동체 우선의 목표
 - 사회적 경제의 활동이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의 수단이 아니라 구성원이나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둠
- ② 독립적 경영
 - 사회적 경제를 공공경제와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으로부터의 편익을 통해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

③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 협동조합의 원리인 1인1표(one member, one vote) 원리에서 유래²⁾

④ 소득분배에서 사람과 노동의 우선

- 사회적 경제의 조직형태에 따라 보수의 제한, 노동자/구성원/이용자간 보너스의 배분, 기업발전을 위한 유보금 적립, 잉여금의 사회적 목적 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

제2절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정체성

가. 협동조합의 개념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1995)

-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로 정의
- 가장 대표적인 정의로서 민주적 운영, 결사체, 사업체 등 운영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

○ 미국 농무부의 정의(1987)

2) 1인1표 원리는 최근 여러 가지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1주1표(one share one vote) 원리는 배격하며 구성원당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의미

- 협동조합을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을 기준으로 편익을 배분하는 사업체”(a user-owned, user-controlled business that distributes benefits on the basis of use)
- 운영주체의 성격에 초점을 둔 개념
- 협동조합기본법의 정의(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
 - 사업 방식과 목적에 초점을 둔 개념

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전성균, 2008: 18-20)

- 주체 : 조합원이 주체
 -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조합원이 경영주체³⁾
- 목적 :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 주식회사가 경제적 이익, 즉 주주의 이익(profit)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협동조합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한 조합원의 편익(benefit)을 목적으로 함
- 방법 : 조합원이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로서 협동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
 - 협동조합은 고객이 곧 주인인 조직이며 조합원이 소유하고(owned), 통제하고(controlled), 수혜 받는(benefited) 조직
 -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며 사업 이용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임

3) 사업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인지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나 ICA의 정의에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배경, 협동조합의 취지, 협동의 동기,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음(전성균, 2008: 18)

- 협동조합은 다수가 협동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체임

다. 협동조합의 가치

- ICA는 협동조합의 이념을 정리하여 1995년 ICA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정립
- 협동조합의 가치 : 자조(self-help),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민주(democracy), 평등(equality), 공정(equity), 연대(solidarity)
-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신조) : 정직(honesty), 공개(openness),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

라.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1984년 설립한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ICA가 원칙으로 채택⁴⁾
 - 1937년 ICA가 처음 채택한 이후 1966년과 1995년에 개정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설정
- 7대 원칙
 -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 가입(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협동조합은 자율적 결사체로서 성별, 인종, 정치,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가입이 자유롭게 개방
 -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이 정

4) Robert Owen William King을 중심으로 1844년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을 창설하였으며 세계 협동조합사에서 가장 최초이자 완전한 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음(전성군, 2008: 184)

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등한 의결권과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행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조합원은 자본조달의 부담을 지며, 민주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출자에 따라 배당을 받으며 잉여금 발생시 조합발전, 조합원 편의제공, 내부유보 및 기타 활동지원 등에 배분

④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의사결정의 자율,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등을 통해 조합원이 자율적, 자조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⑤ 교육, 훈련 및 정보(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경영자, 직원 등이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⑥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협동조합은 동종간, 이종간, 지역간, 전국적, 국제적으로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 상호간 협동을 추구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마. 협동조합의 이원적 성격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결사체(association)라는 성격과 사업체(enterprise)라는 이원적 성격을 동시에 지님(전성균, 2008: 21-22)

① 사회적 - 운동체적 성격 : 협동조합은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이 자발

적 협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개혁운동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결사체로서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중요

- ② 경제적 - 사업체적 성격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동종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사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초기의 협동조합은 사회적 성격이 강했으나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협동조합의 사업체로서 경쟁력 확보가 존립의 관건으로 부상되어 경제적 성격이 커짐
- 양자의 성격은 경우에 따라 상충적이기도 하지만 조합원이 소유자이자 이용자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성격의 조화가 협동조합의 필수적인 성공조건임

2. 협동조합의 유형

가. 학술적 유형구분⁵⁾

① 소비자 협동조합

- 공장주와 상인들이 낮은 품질의 생필품을 독과점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에 맞서 영국 로치데일(Rochdale)지역의 노동자들이 설탕, 버터, 오트밀을 파는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시초
- 질 좋은 상품을 최선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조합원에게 소득증대 효과를 주며, 생필품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취급
 - 조합원의 실직, 주택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공제조합, 주택협동조합 등이 소비자협동조합 내에 또는 독립하여 창설

5) 정원각(2009: 19-20), 황영모(2012: 10-11) 등을 참조

- 예 : 구매협동조합(먹거리, 서비스 등), 주택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공제조합

② 생산자 협동조합

- 프랑스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으로서 영세 자영업자 또는 가족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영리기업에 맞서기 위해 결성하였으며 농민들이 만든 농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
-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서 제값을 받고 상품을 팔수 있고 공동구매를 통해 원재료 단가를 인하하고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
- 노동자 협동조합: 1990년대 이후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결성
 - 종업원 지주회사와 형식이 비슷하지만 투자이익 증대보다 노동자의 급여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건축장인들의 건축협동조합, 요리사들의 급식협동조합, 유아교사들의 어린이집협동조합 등이 대표적 사례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농장 소유 시 농자재 및 농기구 공동구매, 공동이용 등을 위해 조합 결성
- 중소기업협동조합: 자금, 금융의 상호 이용을 위해 조합 결성

③ 신용 협동조합

- 19세기 독일 농촌지역에서 농민의 고리채 자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라이파이젠(Raiffeisen)협동조합이 효시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생산자나 중소소상인, 소비자, 생활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
- 대출받는 조합원의 신용정보를 잘 아는 점이 경쟁력이며, 조합원 배당 없

이 이익금의 내부적립 원칙을 정립하여 자체적으로 자본의 확충이 가능

-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1960년 성가신용협동조합이 효시

④ 사회적 협동조합

- 2000년대 이후 정부지원만으로 사회복지 수행에 한계를 느낀 비영리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이 이 유형에 해당

⑤ 복합협동조합(협동조합간 연대)

- 이해관계자협동조합(멀티스테이크홀더: 스웨덴) : 유아시설을 운영하는데 교육제공자인 교사, 교육수혜자인 학부모, 복지책임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
- 산소(産消)협동조합(생산자+소비자: 일본 캐나다) : 일본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산소(産消)생협(에히메 유우끼생협), 캐나다에서는 생산자조합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와일드 아일랜드식품 협동조합) 등을 결성

나. 사업내용별 유형구분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음⁶⁾

①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 소규모 조합원 형태로 사업이 많이 전개되는 복지, 육아 등의 사회서비스
- 사업예시
 - －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 서비스 분야 등

6) 분야별 유형구분은 협동조합 관련 8개 개별법으로는 설립되기 힘들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용이하게 설립가능한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서술(기획재정부, 2012. 2, 내부자료)

-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② 근로자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조합원이 직원인 생산자협동조합이 설립 가능해져, 자영업자 등 개별 개인사업자의 공동권익과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음
- 사업예시
 -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③ 경제·사회 영역 등

-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에서 소규모 모임처럼 유지되어 오던 다음의 활동조직들이 협동조합형태로 창업할 수 있음
 - 사업예시
 -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 국회내 활동: 국회의원(정책연구·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 문화활동: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 기타 활동: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 ※ 단, 상호·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

제3절 기존 협동조합 정책 현황

1. 기존 협동조합 제도 및 실태

가. 우리나라 협동조합 경제의 규모

- '10년 기준 8개 개별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전국의 협동조합(법인격 획득 기준)은 5,046개이고, 조합원은 2,926만명(조합 출자금 납부 기준)이며 신용사업과 각종 고유사업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
- 특히 농협은 농업생산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농업발전과 농민조합원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협동조합을 지향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의 사업 체수는 8,620개소, 직원수는 11만여명임

<표 2-1>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현황

조합명		조합수 (개소)	조합원수 (천명)	사업규모 (조원)	담당부처	관련법
생산자	농업협동조합	1,171	2,448	206.3	농식품부	농협법
	수산업협동조합	92	159	13.1	농식품부	수협법
	산림조합	142	485	2.6	산림청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	963	5,579	34.8	금융위	신협법
	새마을금고	1,501	19,448	68.2	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업연초 생산자협동조합	19	6	0.03	재정부	업연초생산 협동조합법
	중소기업 협동조합	978	640	0.6	중기청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80	500		공정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1), 박범용(2012), 22쪽에서 재인용

나. 협동조합의 종류 및 실태

- 농업협동조합
 - '56년 5월 농협은행(일반은행법 근거)이 발족하고 '57년 2월 14일 농협은행과 농협법이 공포
 - '61년 국가재건회의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법을 제정하여 1차산업의 발전에 기여(식량자급, 산지유통 개선 등)
 - '61년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여 통합농협으로 전환
 - 교육지원사업, 신용사업, 경제사업 등을 수행하며 '12년 현재 1,167개의 단위농협, 245만여명의 조합원을 보유
- 축산업협동조합
 - '57년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중앙회 회원조합으로 출범했다가 '80년 축산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독립적인 축협으로 전환
 - 2000년 7월 1일 축협과 인삼협이 농협에 통합
- 수산업협동조합
 - '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수협이 탄생
 - 중앙회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으로 구성
 - 92개 조합, 1,993개 어촌계, 조합원 56만여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 1961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
 - 원자재 구득권 완화, 조합원 제품판매 촉진, 조합원간 사업 조정, 품질 향상 및 규격화 사업자금 대부알선, 경영지도 및 교육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
 - '12년 현재 971개 단위조합, 64만여명의 조합원 가입
- 신용협동조합
 - '64년 처음에는 천주교구(부산 메리놀병원 성가신용조합)로 조합이 설립

-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제2금융을 정비, 당시 농어촌과 도시의 서민의 고리채 해소에 크게 기여
- '11년 현재 955개 단위조합, 586만명 조합원 보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00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이후 10년간 생협의 급격한 확대의 전기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제정 목적: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
- 이후 10년간 생협조합원 800%, 매출액 1,300% 증가, 2009년 배추값 파동시 생협은 계약재배를 통해 배추가격안정화에 기여
- 생협의 대부분은 농산물직거래 생협, 의료생협, 그리고 대학생협 등에서 조성되었음
- 창립요건: 30인 이상 조합원
-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설립인가주의를 채택

○ 새마을금고

- 절대빈곤, 높은 실업률, 고리채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을 구제하고자 1963년 경남에서 재건국민운동을 중심으로 시작
- 서민들의 자조조직으로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직으로 탄생
- 전통의 상부상조와 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대표적 신용협동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성장
-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마을금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명칭도 '마을금고'로 일원화되었으며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름
- 금고는 지역금고와 직장금고로 구분되며 50인 이상이 발기하여 관할

-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에 2011년 현재 1,448개 금고가 설립되어 있으며, 15,989천명의 회원과 91조3,761억원의 자산을 보유⁷⁾
 - 수익사업인 신용사업을 비롯하여 고유사업인 복지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공제사업 등을 수행
 - 단위 금고별로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므로 독특한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갖고 있음
 -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며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 기타 조합(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별도 인허가 없이 자율설립
 - 민법, 상법상 법인 규정 준용
 - 농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상 자격을 갖춘 농업인) 5인 이상 설립 가능
 - * 마을기업 중 16.3%가 영농조합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영농조합법인은 소재지 관할 농업·산림·염연초생산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7) 2011년 9월 종래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표 2-2> 협동조합 유사단체 비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근거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근거법령 없음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목적	조합원의 소비자생활 향상,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1)	농업인의 지위 향상,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1)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1)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 균등,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1)	상부상조정신에 의한 자금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1)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성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조합 및 중앙회)	비영리법인(조합 및 중앙회)	비영리법인(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비영리법인(단위금고, 중앙회)	둘 다 존재	둘 다 존재	둘 다 존재			
재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9)	사업 경비 보조·용자 (§9)	사업 경비 보조·용자 (§9)	공유재산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무상 대부(§9)	국공유재산에 대한 우선적 대여·사용·수익, 중앙정부의 보조금지원(§3)	'12년 200억원(국비100억원, 지방비100억원)	시설비 등의 지원(§11), 사회보험료 지원(§13),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14)	사업비 지원가능 (§10)			
세제 지원	×	비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손금 산입 인정(동법 §29)				×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조특법 §5-§8 및 지특법 §56-§58에 의한 혜택있음)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세액 감면(조특법 §85의6) 취득세 50%·등록세 50%·재산세 25% 경감 (지특법 §22의 4)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 §3)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세의 부과금 면제가능(§99)			
	조특법** §72① 적용 범위(과세율 9% 적용)										
	개별조합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및 중앙회	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단위금고 중앙회						
	지특법** §14 적용 여부(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특법§60										
×	(중앙회)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조합) 100% 면제	(중앙회)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조합) 100% 면제	(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취득세 50% 경감	×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한계

-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1차 산업이거나 1차 산업과 관련된 금융신용업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이미지가 전근대적임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지도도 미미하여 협동조합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2, 3차 산업의 협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협동조합기업의 확대가 제약되고 있음
 - 협동조합이 개별법으로만 설립 가능(현재 8개 개별법),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곤란하여 발전이 제한되고 있음
 -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협동조합간 사업연계 미흡
- 협동조합간 협동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호 협력 미흡
 - 신탁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불가능, 개인 조합원 대출로 한정되다보니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실발생 우려

* 유럽 협동조합은행은 대출의 29%가 지역단위 중소기업을 대상

제4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기대효과

1. 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기본법 제정의 배경

-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시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
 -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서민·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생발전에 기여
-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8개 개별법(농협, 수협, 신협 등)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제한
 -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구성원의 동등한 출자, 1인1표의 사업운영, 사업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가 다수
-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 많은 국가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을 채택하거나(독일, 이탈리아 등) 또는 민법·상법의 형태로 협동조합을 규율(영국 등)

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분야를 대폭 확대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영리법인(주식회사등)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대상분야에서 그동안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를 해소
 - 그동안은 대부분 개인사업, 주식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 파생
-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기본법에 반영
 - 협동조합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생협을 중심으로 32개 단체가 「협

동조합법 제정연대회의(‘11.10월 발족)를 구성·활동

- UN과 세계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기본법 제정으로 국제기준에 부응
 - 국제기구에서 세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격차, 각국 내부의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는 ‘협동조합’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⁸⁾

[그림 2-5]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

경제영역	하이브리드영역	사회영역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영리기업 규율	인적결사체 기업의 규율	비영리조직 규율
사익(私益)	공익(共益)	공익(公益)
주식회사 등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출처 : 송두범·김종수(2012), p.18

2. 기본법의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의 법적 개념 정립

- (개념)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
 - ① 법인격 : 목적과 운영방식(이용자소유기업)에 의해서 영리회사(투자자 소유기업)와 구분, 다양한 법인형태 가능
 - ② 의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8) '09년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 ③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이 원칙
- ④ 가입·탈퇴 :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⑤ 배당제한 :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내부 유보를 통해 자본비용을 절감
- 협동조합은 조직법상 특징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 타 유형의 조직과 차별화

<표 2-3> 협동조합과 타 유형의 조직간 비교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기본법	개별법	
근거	상법					기본법	개별특별법	민법
사업목적	이윤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운영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설립 등기(신고제)					신고(영리)+인가(비영리)	인가제	인가제
책임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예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농업회사 법인,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회사 등	자활공동체 등	농협, 수협, 생협 등	학회,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 영 리 회 사 >						< 비영리 >		
< 사 회 적 기 업 > (고용부 인증기업)								

출처: 기획재정부, 2012.2.8.,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나.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 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
-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정의, 설립절차, 주요사업 등을 규정
 - ① (일반)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영리법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인으로 명시 (비영리적 성격을 반영)
 - ②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기타 협동조합 설립목적과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

<표 2-4>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설립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시도지사 신고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금의 10/100 이상 ▪ 배당 가능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금지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다. 협동조합간 연대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 설립을 규정

-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공동사업 및 공동이익 추구를 가능케하고 상호 보완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간 연합의 설립요건을 규정
- 협동조합간 연합은 일반 협동조합 간 연대조직인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 협동조합 간의 연대인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
 - 협동조합연합회: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3개이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협동조합기본법 제114조)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

-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일반법-특별법 관계)
 - ※ 8개 개별법 :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년), 신용협동조합법(1972년), 산림조합법(1980년), 새마을금고법(198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년)
- 일정한 요건(일정규모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예를 규정

마.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설립요건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회적 협동조합은 관계 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 (지역농협) 1,000인, (소비자생활협) 300인, (신협, 새마을금고) 100인

○ 사업분야

① (일반) 협동조합

-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육, 훈련,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용 및 공제사업은 허용되지 않음

②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전체 사업량의 40%)으로 추진해야 함
- 신용 및 공제사업은 허용하지 않지만 조합원 대상 납입출자금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가능

바. 감독 및 벌칙 등

-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 규정
 - 다만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규정하지

않음

- 협동조합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범위반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규정

사. ICA의 협동조합원칙을 법조문으로 최대한 반영

-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격 반영 : 투기행위 금지, 조합원 이용원칙(시행령에 예외 인정) 등
- 의무사업 항목 : 조합원 교육과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 등
- 지속가능한 운영제도 : 출자배당 10% 이내, 이용액 배당 우선, 법정적립금 10% 이상 등

아. 협동조합 추진체계를 규정

-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 담당
-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3년주기),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인가·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실시

자. 기타

-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신설
- 상법(총칙, 상행위, 유한책임회사) 및 민법(법인) 규정 준용

3. 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가. 기업 조직법적 측면

-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함으로써 민법상 조합, 상법상 회사 등 기존 법제가 충족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법인격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정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체 설립·운영을 용이하도록 조치

나. 협동조합 활성화 측면

- 협동조합의 설립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 충족이 가능
 -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
 -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
 - 영세소상공인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송 등 전통·재래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 자활공동체 3,000개소, 돌봄사업,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수요가 있음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린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제공
 - 특히 인구과소화, 고령화된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시장성이 낮아 영리기업들이 외면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음

- ※ 사례 :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사회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2008년 328개소의 협동조합을 운영

다. 경제·사회적 효과 측면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시장경쟁 촉진
 - ※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
 - ※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한 공동행동의 결과로 탄생(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
- 다양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등 고용창출이 가능
 - ※ 협동조합은 전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 보다 20% 많은 수치
- 협동조합 활성화는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공공성의 증대가 기대됨
 - ※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협동조합적 기업운동을 바라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어 주식회사 등 법인격으로 운영의 불안정성 발생

<표 2-5> 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현 재)	(법시행후)	(기대효과)
① 법 령 (설립분야)	농협·수협 등 8개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기본법」 UN ‘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년) 개도국 파급 효과 (일본등 도입 못함)
② 법 인 격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법인격 부여 (영리· 비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③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 기준)	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④ 복지정책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복지정책’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는복지’ 구현 복지사업 보완 (사회적기업, 자활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⑤ 신규창업 (일 자 리)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 제한)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⑥ 노 동 자 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설립 제한	설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택배·퀵서비스 ·재활용·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⑦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취약 (법인격단체 설립 제한)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디·학습지교사· 돌봄근로자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등)
⑧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상인, 소상공인등)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자영업자(개인· 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협력·협업·공동구매등) 재래시장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등
⑨ 기부문화 활성화 등	기존 복지단체 (비영리법인)등 통해 기부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통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목적의 협동 조합 설립 가능 (소규모 기부조합 활성화) 기부 활성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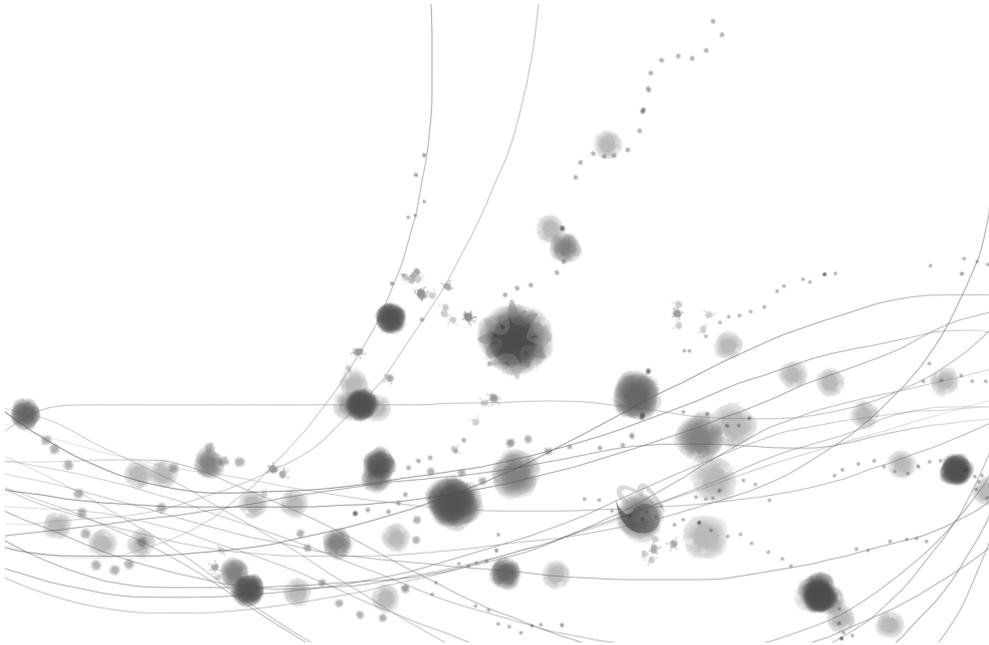
제 3 장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제2절 협동조합의 사례분석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제 3 장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표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탐색 및 발굴
- 국내외 선진적인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협동조합의 사업 유형, 사업 추진방식, 운영원리, 지역공헌활동 등을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분석 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금융과 신용조합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경제영역에서 소규모 조합원으로도 협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해 졌음
 - 크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 근로자협동조합, 사회경제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됨

- ①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 ② 근로자협동조합
 -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킷서비스 등
 -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 ③ 경제·사회 영역 등
 -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 (국회) 국회의원(정책연구·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 ※ 단, 상조·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
- ④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전체 영역에서의 3개 이상의 협동조합간 연합회, 이종연합회, 동종연합회 가능

출처: 기획재정부, 2012.2.

제2절 협동조합의 사례분석

1. 사회서비스영역의 협동조합

가. 안산의료생협⁹⁾

1) 개요

- 안산의료생협은 생명과 환경을 지니는 안산시민의 모임과 동의학 민방연 구회 2개 단체를 토대로 설립
- 연혁
 - 1999년 5월 21일 안산의료생협 결성을 결의
 - 5개월간의 조합원 자체교육 실시(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일본의료생 협 연수 등 10차에 걸친 준비모임을 가짐)
 - 1999년 10월 15일 안산의료생협 발기인 대회
 - 2004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
 -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인증
 -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부문 대통령 표창
 - 2011년 노인 장기요양기관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 목적
 - 안산의료생협은 보건, 의료와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의 료인이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생활협동조합임
 -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 조합원 자 격으로 공정가격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창립이념) 우리가 스스로 설립하고자 하는 병원은 병든사람, 환자들 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는 병원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참

9) 경창수(2012), 조병민(2011)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여하여 건강을 자신과 이웃이 누리도록 실천하는 병원이다. 아픈 사람의 치료비로 병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며, 환자가 의료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병원이 아니다. 치료위주의 공급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활동과 건강증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병원이다“(출처: 안산의료생협 홈페이지)

- 의료생협은 치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에 중점을 둠

<표 3-1> 의료생협의 항생제 처방률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인천평화의료생협 평화의원	19.9
안산의료생협 새안산의원	7.4
안성의료생협 안산농민의원	5.9
안성의료생협 우리생협의원	20.5
원주의료생협 밝음의원	13.8
대전민들레의료생협 민들레의원	9.8
전국 의원급 평균	53.2

출처: 추혜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조병민(2011)에서 재인용

2) 활동 및 성과

- 2000년에서 2011년 조합원의 급증
 - 2000년: 조합원 300세대, 출자금 5,800만원, 사업고 1억원, 사업소 2개, 직원수 6명
 - 2011년: 조합원 4,800세대, 출자금 4억 3천만원, 사업고 28억원, 사업소 7개, 직원수 65명
 - 2012년 현재 조합원 5,200세대로 급증하고 있음
- 안산의료생협의 주요사업은 건강예방활동, 병의원 운영, 주치의사업, 주민건강활동, 자원봉사활동, 소모임활동, 교육 및 건강강좌, 사회적기업네

트위크 등이 있음

- 건강예방활동: 건강강좌, 건강소모임, 건강마을만들기사업,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이 있음
 - 특히,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은 조합원과 조합이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조합원 모임(조합원의 건강체크, 건강정보 제공 등)
- 병원 운영: 2000년 7월 새안산의원, 새안산한의원 등 2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우리생협치과, 건강검진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간호사업소, 꿈꾸는 집(요양원) 등 4개가 추가 운영되어 총 7개가 운영 중임
 - 방문간호사업소: 서비스 대상은 수술후 조기퇴원자, 만성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으로 가정간호,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재가장기요양센터: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동반이동 등을 실시하며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 중임
 - 꿈꾸는 집(요양원): 2012년 3월에 개원하였으며 17인 정원의 시설로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자가 지원 중임

○ 안산의료생협의 지역사회 활동

-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를 지원(2011년 3,500만원) 하고 이를 위하여 2010년 10월 안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음
- 독거노인에 대해 무료 반찬제공서비스(2011년 1,200만원)
- 취약계층 무료방문진료 및 한약지원(2011년 1,400만원)
- 거리나 노인정 건강체크, 건강학교, 자원봉사활동

나. 푸른생협

1) 개요

- 인천에서 1993년 창립
- 목표
 -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요구를 협동의 힘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생활인)들의 협동조합
 - 안전한 먹을거리 공동구입 사업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소비하고 국내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
- 특징
 - 조직 창립은 초창기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지역사회내 친환경, 생명운동 등에 대한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운동으로 확대
- 연혁
 - 1993년 4월 창립
 - 1993년 9월 우리밀살리기운동 전개
 - 1996년 9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시민모임 추진위] 결성
 - 1997년 자연 환경 건강을 살리는 수요강좌 개최(10월), ECO 가족만들기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12월)
 - 1998년 어린이문화마당 개최
 - 1999년 12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 창립총회
 - 2000년 8월 일본 DO COOP(생협)와 직원 및 어린이교류 정례화
 - 2001년 3월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협월요포럼' 정례화
 - 2004년 6월 인천지역 어린이집을 위한 급식지원금 제도 실시
 - 2005년 5월 부평구에 제3매장(부평점) 개소

2) 활동 및 성과(권순실, 2011)

- 1993년 창립한 후 두레(생활재 공동구입반)를 주요 활동 단위로 하여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폐식용유 수거운동, 재활용비누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
- 관심분야에 따라 50여 개의 두레(보통 4명~8명)들이 운영
- 두레원을 중심으로 자치부녀회를 구성하여 분리수거 봉사, 마을 가꾸기, 야나바다 장터 등을 열기도 하고 두레에 지원되던 이용고의 1~2%에 상당하는 기금을 모아 동네 학교의 결식아동 돕기 등을 전개
- 생협생활재를 공급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공부방에게는 이용고의 3~7%에 해당하는 쌀을 지원 중임(2010년 기준 180여 개소, 매월 250~300만원)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개
 - 한부모가정과 여성의 자립을 돕는 인천지역 여성프로그램 지원기금
 - 어렵게 일하는 지역공부방 실무자를 돕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3~4곳에 지원하고 생산지 견학, 문화 프로그램비 등 지원(2003년부터~)
 - 총회 결산 때 이익잉여금의 1/3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적립(2004~2010년, 2,300여만원)
- 인천평화의료생협과 조합원상호혜택협약 체결 및 치과 개설시 500만원 출자
- 안전먹거리공동체의 생성을 넘어서, 콩세알도서관, 복지사업 연대 등을 추진하여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7년에 푸른생협의 남동지부 조합원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콩세알도서관” 설립하고 2004년부터 조합원활동가들이 회의비

- 등을 모아 책을 사들였고 개관한 이후에는 푸른생협에서 연간 2,500~3,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창립 시 1,000만원 출자 및 복지사업 연대(지역 아동센터 설립, 도서관 설립 추진 중)
- 강화 매화마름 보전운동 참여 및 매화마름쌀을 생활재로 공급. 습지 보존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강화쌀, 콩세알두부, 고구마, 묵 등으로 품목 확대)

다. 바른생협

1) 개요

- 1985년 5월 설립
- 구관장 중심이 아닌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배송방법(공급)을 최초로 도입하여 유기농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직거래를 시작

2) 활동 및 성과(권순실, 2011)

- 7개 매장별로 아나바다 수익금, 떡판매 기금 등을 모아 방과후 학교에 필요한 물품지원(매월 25~30만원)
- 바로미 도서관 설립: 조합원이 기증한 책 및 아나바다 수익금으로 조성
- 복지기금의 조성
 - 바른생협 이용고의 0.1%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매장에서 봄, 가을 진행하는 아나바다 장터의 수익금,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1,000원 이상의 CMS 후원기금 등으로 조성하여 마음을 나누는 밥집 운영, 어린이집, 방과 후 학교 지원, 시니어 지원 예정
- 생산자와의 연대
 - 생산지를 견학 갈 때 책, 작업복, 어르신들을 위한 유모차 보내기, 생산

지 일손 돕기 활동의 정기적 운영

라. 코프 라스트라다(Coop Lastrada)

1) 개요

- 노숙인 교육 및 자활에 대한 민관협력사례로, 시-협동조합 간 협력
 - 협동조합인 코프 라스트라다가 노숙인쉼터를 운영하는데, 쉼터의 시설은 볼로냐시에서 제공하는 곳으로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관리를 협동조합이 맡고 있음
- 1998년에 집 없는 사람들이 자력갱생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현재 조합원이 약 50명 정도로 노숙자 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공중화장실과 공원 청소, 자전거 수리 등을 하고 있음
 - ※ 볼로냐 시는 공공시설 관리와 노숙자 지원을 이러한 협동조합을 통해 진행

2) 활동 및 성과

- 코프 라스트라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조합원 가입을 출자금으로 하지 않고 1년6개월의 교육과정(갱생과정)을 거쳐야 조합원자격이 부여된다는 점
- 교육과정에서 알코올, 마약 중독 치료를 비롯해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과 정기적인 의사 진료도 받으면서 자전거 수리나 재봉과 같은 기능 훈련을 받음
 -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비율은 50%

마. 올챙이 어린이집

1) 개요

- 2005년 2월 1차 사업을 실행
- 조직형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정(2010년)
- 목적
 -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방과 방과후 교실 운영

2) 활동 및 성과

- 준비작업
 - 광명 YMCA 회원들이 2003년부터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생산자조합)에 대한 자료를 학습
 - 2004년에는 일공동체의 정관만들기, 준비팀의 목적문 만들기, 일공동체 목적문과 수칙 만들기, 모의사업을 정해 사업계획서 만들기와 모의사업 진행, 광명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시장성 검토, 생산 공동체 견학, 노인요양센터 자원봉사와 설립에 관한 법적기준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 수행
 - 2005년 2월, 1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실행팀을 모집하였고, 실행팀이 구성된 후 2개월의 사업 준비기간을 가짐
 - 2005년 4월9일 일공동체 ‘챙이와 팽이’(올챙이 어린이집과 달팽이 방과후 교실)를 설립
- 활동
 - 천기저귀 사용, 자연물 이용한 놀이감, 유기농 먹을거리 이용, 텃밭 가꾸기, 바깥놀이, 산책과 마을 구경하기 등의 생명 육아를 지향
 - 유치원 교사 출신의 어머니가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
 - 2008년, 2009년에 걸쳐 두 명씩 번갈아가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교

- 사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수익금에서 지원)
- 중간에 사회적 일자리 기금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후속 기금을 받지않기로 결정
 - 일공동체의 출자금은 4명 구성원 기준 2,800만원이고 차입금은 8,200만원이며 총매출액은 월평균 약 400만원(원아 수: 13명)으로, 임금수준은 80 ~110만원(근무시간에 따라 다름, 시급 5,000원 기준)
 - 수익금의 10%를 적립하여 일공동체 2호점을 준비

2. 근로자협동조합

가. 리브레리에 코프(Librerie Coop)

1) 개요

- 리브레리에 코프는 코프 아드리아티카(Coop Adriatica) 소속 협동조합
- 도서협동조합인 리브레리에 코프는 슬로우푸드를 표방하는 이탈리아(Eataly)와 협동하여 북카페인 암바시아토리(Ambasciatori)를 운영
- 북카페인 암바시아토리는 볼로냐 시내 마조레 광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1층에서 2층 일부: 리브레리에 코프가 운영하는 서점
 - 2층 일부와 3층: 이탈리아의 친환경유기농산물 판매장, 음식과 맥주, 와인 판매하는 카페가 있음
- 서점은 전문서적에서 실용서적, 어린이 도서에서 체험용 놀이기구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하는 책들이 구비되어 있음

2) 활동 및 성과

- 조합원은 할인된 값으로 책 구매 가능

- 이탈리는 구하기 힘든 전통 유기농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카페를 운영하여 아침에는 간단한 브런치세트를 제공, 저녁 때는 와인카페 등 문화공간을 제공
- 협동조합과 친환경음식기업이 네트워킹하여 친환경 먹거리를 주 메뉴로 하는 식당, 어린이 놀이마당, 서점과 카페, 갤러리 등 조합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내 복합공간을 운영하게 하였음

나. 원주노인생협

1) 개요

- 2005년 9월부터 설립 준비하다가 2006년 9월 창립총회 개최
- 지자체, 관련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2007년 2월 원주시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협약을 맺고 위생관리 용역, 소독방역업 등 관련 영업신고를 하였음
 - 2008년 원주생협과 일자리협약을 맺고 조합원 및 유치원 주민식자재 택배 사업 등을 추진
 - 2009년 2월 노동부, 원주시와 크린콜사업 협약(대형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사업)을 맺고 사업을 추진
 - 2010년 2월 원주 관내 초등학교 청소용역 신규 및 재계약
 - 2010년 10월 건물조합관리사업단을 결성하여 총 5주 40시간의 교육을 시작

2) 활동 및 성과

- 조합원 자격부여: 평창, 횡성, 원주의 지역거주민, 출자금은 1좌 이상으로 1좌당 10,000원이며 가입비는 1000원(초기에는 출자금과 가입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조합원 자격 생성)

- 현재 총 10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으로, 주요 활동은 청소, 택배, 소독·방역, 숙직경비 등임
- 공공기관과 관련한 일자리사업 이외에도 민간 시장에서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돌보미센터(보육, 산모돌보미, 간병, 노인방문도우미 등)
 - 자전거주차장사업(원주시 주요 지점에 자전거 대여, 수리, 무료 주차장 설치)
 - 조경벌초(골프장, 묘지관리)
 - 6080실버카페(음료, 차, 주류, 파전 등의 판매)
 - 결혼이민여성교육(한국어 및 전통예절, 요리법교육 등)
 - 기타사업(보험설계대리점, 상조회대리점 등)

3. 일반 경제사회영역의 협동조합

가. 무리(murri)

1) 개요

- 1963년 설립, 이탈리아 볼로냐 소재
- 배경: 주택재개발이나 지역환경개선사업 등이 보통의 민간업체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건설사들의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음
- 목적: 해당 건축물의 실수요자인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의 공급, 주택의 사후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추진
 - 즉 업체 수익성보다 실수요자의 효용(utility)를 증가시킴
- 협동조합 무리(murri)는 주택을 지을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하며 건축자재, 인테리어를 결정하고 시공은 하청을 통해 진행

- 하청도 협동조합인 경우가 많음
- 건축자재는 대체로 지역에서 구입하여 지역내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선순환경제시스템의 구축에 기여

2) 활동 및 성과

- 출자금 50유로를 내고 조합원 자격 부여받을 수 있음
- 2010년 현재까지 2만 3,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만일 여러 조합원이 동시에 한 집을 신청하면 조합에 가입한지 오래된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줌
 - 만약 자금이 모자랄 경우 10년 임대후 분양도 가능(10년 동안의 임대료를 집값에 포함시킴)
- 협동조합 정기총회는 1년에 1번 개최하여 재정·계획·프로그램에 관해 결정하며 총회에 대략 300-400명 정도 참석
- 주거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하여 협동조합 자체의 사업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음
 - 건축비는 일반주택 시세보다 5-10% 정도 더 비싸나 고급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므로 15-20% 정도가 더 저렴(마진율은 5-10% 정도)
 - 이익금 총당을 통하여 다음 세대 조합원들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협동조합 재정면에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 다름

나. 키친코프(kitchen Coop)

1) 개요

- 2005년에 3명으로 시작(웹디자인, 편집디자인 경력자)
- 다양한 인쇄홍보물을 만들고, 그 외에 광고와 프로모션, 이벤트, 웹사이트

제작 등 광고홍보의 전단계 작업에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하는 종합 광고
홍보 대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키친코프 대표인 안토넬라 디 비타(Antonella Divita)가 2000년대 초반부
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연합회인 레가코프의 홍보물을 제작하
면서 협동조합에 대해 알게 되면서 홍보기획 협동조합을 설립

2) 활동 및 성과

- 키친코프는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1년에 2회 개최하여 결산보
고 및 예산계획의 수립, 사업 방향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행
-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홍보기획을 맡기 때문에 영업의 어려
움이 없으며 연합회인 레가코프가 다른 협동조합을 알선해주기도 함
- 3명이 각각 3천유로씩 출자하여 키친코프를 만들어 4년만에 6명으로 증가
- 한해 매출은 약 8억유로로 성장

4. 협동조합 연합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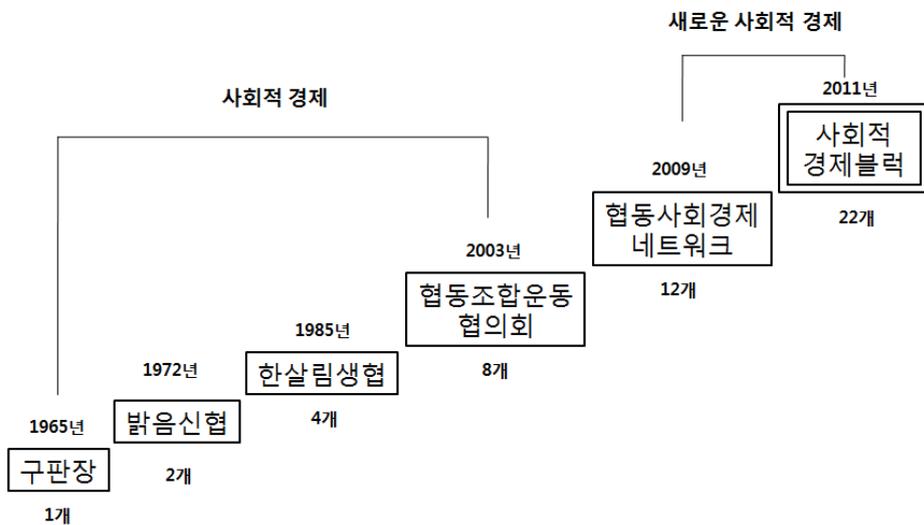
가. 개요

- 원주지역은 열악한 강원도 경제(탄광촌경제)로 인하여 대기업의 관심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으며 1960-70년대부터 시작된 일군의 지역
사회운동가(지학순주교, 장일순의 생명사상)의 리더십을 토대로 주민주
도 협동조합적 형태의 지역사회단체들이 형성되는 것을 기반으로 다수의
유사 협동조합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 초반에 개별 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너지
를 창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2003년에 원주협
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전신인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가 창립되고 2009

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발전적으로 전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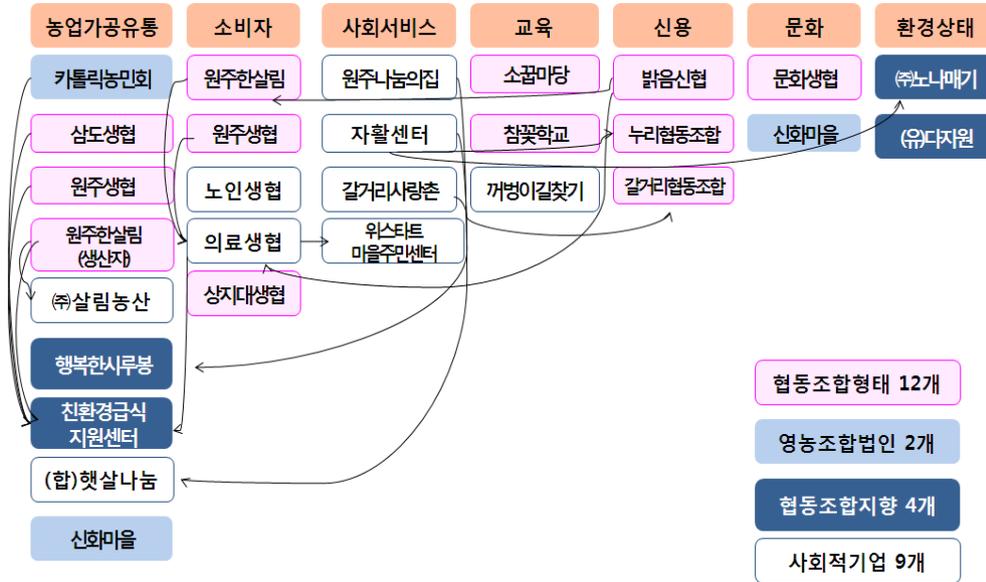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시스템 안착, 참여단체간의 민주적 소통과 조직확대, 생명공동체 추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됨(최진혁, 2011)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원주밝음신협의 제안으로 8개 단체가 시작 - 현재 9개 부문에서 총 2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그림 3-1] 원주 사회적경제의 조직화 과정



출처: 최덕천(2011)

[그림 3-2] 원주시 사회적경제블러화 사업 참여조직 및 관계망



출처: 송두범·김종수(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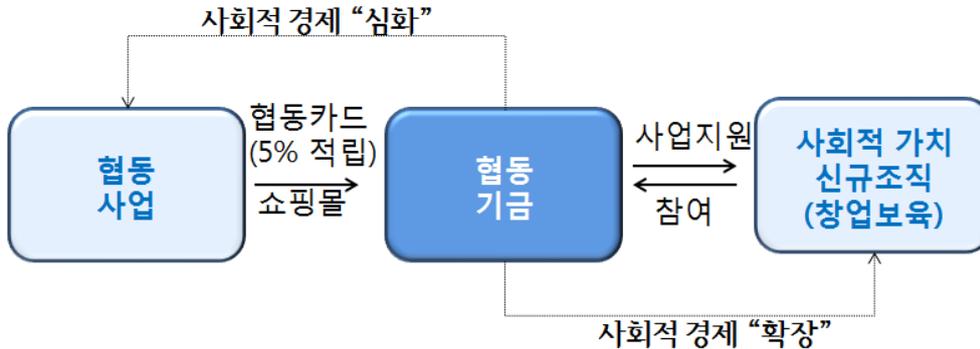
나. 활동 및 성과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5가지의 주요 연대활동을 추진

① 상호부조활동

- 회원단체 간의 상호거래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이를 통한 협동조합의 수익률 제고 및 조합원의 확대)
- 밝음신협의 신생협동조합,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등에 공간 제공(최진혁, 2011)
- 협동기금의 조성 및 운영(2010년): 22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동카드를 사용하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협동기금은 신규 조직의 활성화에 지원

[그림 3-3] 협동기금 운용 메커니즘



출처: 최덕천, 2011, 일부 수정

- 협동기금 수입원 마련: 각 단체의 협동사업결과 발생하는 잉여금 적립금 5%(2010년 한살림총회에서 잉여이익의 5% 협동기금 적립 제도화, (주)살림농산 매년 1천만원 기부¹⁰⁾), 협동카드 수수료 수익 일부·공동사업의 수익금 등

② 네트워크 강화활동

- 회원단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정례회 개최(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임원연수회 개최, 체육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등 회원단체간 일상적 교류
- “원주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소식지 제작 발송
-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축: 원주푸드 추진 및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등

③ 교육활동

- 회원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10) 2008년부터 원주한살림생협에서 분리된 (주)산림농산의 이윤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기부한 것을 계기로 한살림에서 정관개정하였음(김선기, 2011)

증대

- 회원단체 임직원 교육 활동 :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진행
- 인문학 강좌 및 실무 교양 강좌 진행

④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사업확대와 지향성 전파를 위한 지역사회 내 현안 대응 분만 아니라 관련 조례 제정
 - 2005년 3대 조례제정 운동 : 학교급식조례, 친환경농업지원육성조례, 보육조례
 - 친환경학교급식운동 : 2008년 3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개소

⑤ 국제교류활동

- 한일 협동조합 간 교류 : 일본 오사카 S-COOP 및 오사카 키라리생협연합회 교류, 일본 생활클럽 생협 연합회와 교류
- 기술연수 : 일본 생협 소시지 공장 및 술 공장
- 2010년 6월 : 이탈리아 볼로냐 및 트렌토 지역 협동조합 탐방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1. 협동조합 운영시 실수요자 중심의 상품공급과 가격책정

- 무리(Murri) 주택건설조합이나 의료생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형태로 운영될 때는 상품이용자와 소유주가 동일하므로 민간 사기업의 최대 원칙인 수익률 우선주의가 통용되지 않음
- 협동조합에서는 상품을 공급받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품이 생산, 공급되며, 협동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익금의 일부는 적립금으로 환원하여 다음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2. 협동조합의 상호연대 분위기는 커뮤니티 복원에 기여

- 협동조합은 상호부조, 상호연대 원칙에 의거하여 활동이 진행되며, 그에 따라 처음에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서 시작하던 협동조합도 지역 커뮤니티 복원이나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됨
- 예를 들어, 푸른생협의 경우 안전먹거리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이었으나 마을가꾸기사업, 한부모가정돕기, 인천지역 여성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지역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으며 안산의료생협은 조합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분야가 아님에도 예방의학 차원에서 독거노인 반찬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3. 협동조합-협동조합간 연대, 협동조합-지자체 간 협력으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이 지자체나 정부와 협력할 경우 협동조합의 독자적 활동영역을 심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영국의 어카운트3는 다문화사회내 여성인력개발 관련 협동조합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컨설팅을 수행
- 원주노인생활협 역시 공공(교육청, 학교 등)이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수요처를 발굴하였으므로, 지역내 협동조합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시설관리나 위탁사업을 일정부분 협동조합에 맡길 필요가 있음

<표 3-2> 협동조합 관련 4대 분야의 성공사례

분야	조합명	설립연혁	목적	특징	성과
사회서비스 영역	지역보건의료, 안산의료생활협	1999년, 안산	병의원(새안산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요양원 등의 운영	단순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차원에서 교육 및 건강강좌 개설	취약계층 지역의료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반찬제공 서비스 등 공동체 활동 병행
	안전먹거리, 푸른생활협	1993년, 인천	안전먹거리 공동구입, 이를 통한 국내 농업 활성화	안전먹거리 뿐만 아니라, 관심분야에 따라 50개의 두레(4·8명)가 결성	- 분리수거, 마을가꾸기, 아나바다장터, 한부모가정돕기, 인천지역여성프로그램 등의 지역사업 추진 - 의료생활협에 출자
	안전먹거리, 바른생활협	1975년, 안양,군포, 용인 등	안전먹거리 등 푸른생활협과 유사	도서관, 생산자와의 연대 추진(견학 등)	복지기금의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

분야	조합명	설립연혁	목적	특징	성과
	자활조합, 코프 라스트라다	1998년, 볼로냐	노숙인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통해 갱생 및 기능훈련 실시	자활조합의 훈련과정을 졸업한 조합원이 자활조합의 운영자로 활동	훈련 성공율 50%, 현재 조합원 50명
	육아조합, 올챙이 어린이집	2005년, 광명	공동육아를 통한 맞벌이부부 지원	유치원교사 출신의 프로그램 주도, 조합원대상 보육교사훈련,	-수익금의 10%를 적립하여 제2호점 창업 -천기저귀 사용, 텃밭가꾸기, 산책과 마을 구경하기 등의 생명 육아 지향
근로자협동조합	도서협동조합, 리브레리에 코프	볼로냐	암바시아토리를 슬로우푸드 기업인 이탈리아와 공동 운영	조합원 도서할인	서점과 친환경유기농산물직판장, 카페 등의 문화복합공간을 지역공동체에 제공
	노인일자리, 원주노인생활	2006년, 원주	노인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	공공시설 관리, 청소, 자전거관리, 조경벌초, 돌보미, 소독방역, 숙직경비 등	지자체, 관련 협동조합과 연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일반 경제사회 영역	주택건설시행 협동조합, 무리(Murri)	1963, 볼로냐설립	조합원이 원하는 친환경주택 공급	15-20% 저렴	이익금(마진율 5-10%)은 다음 조합원 주택공급으로 충당 -> 재정안전성 확보
	키친코프(kitchen Coop)	2005년, 이탈리아	홍보인쇄물, 판촉, 이벤트개최 등 종합광고대행사	다른 협동조합의 홍보를 대행하므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매년 매출 9억유로
협동조합 연합회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2009년, 원주(전신인 원주협동조합협의회 2007년 창립)	생산, 가공, 환경생태, 문화 등 총 9개부문에 22개의 단체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부조활동: 초기 협동조합들에게 밝음신협외의 공간 및 재원 제공, 협동조합 창업 지원, 협동기금의 조성 - 네트워크강화활동: 회원단체간 일상적 교류, 지자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회원단체 임직원 교육 - 지역사회공동체 활동: 조례제정,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개소 - 국제교류활동: 일본 오사카의 생협과 교류, 볼로냐 방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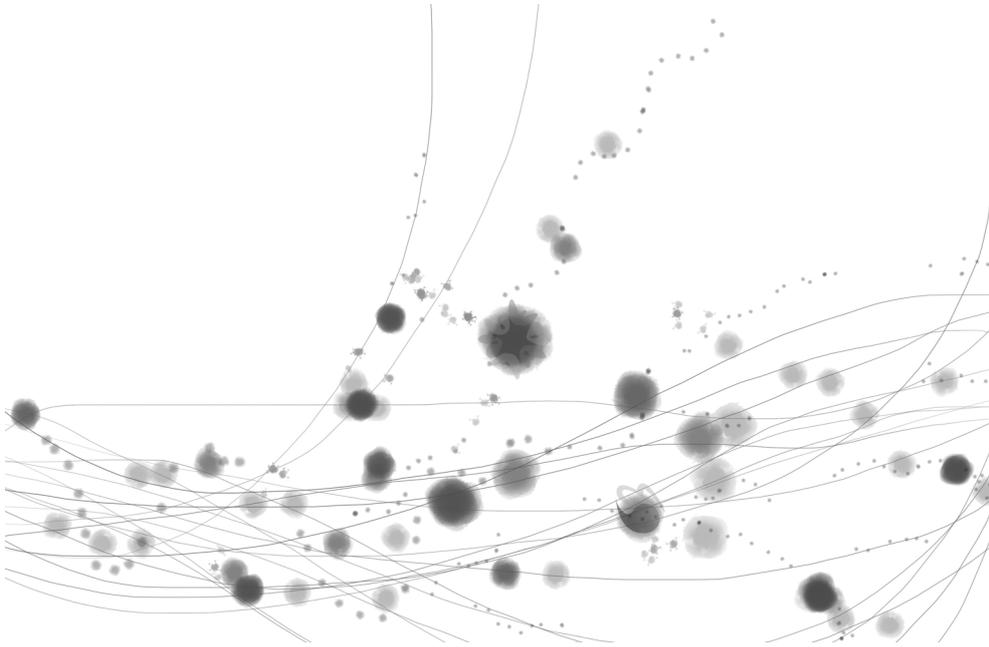
제 4 장

협동조합의 활성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

제3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제 4 장

협동조합의 활성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확산시키는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는 협동조합이란 사업조직에 법인격을 용이하하게 부여함으로써 설립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개방성, 자율성, 독립성 등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개입과 지원을 적정하게 유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단기적 재정지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유리한 환경과 지지기반이 성숙되어야 활성화되므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성에 주력
- 협동조합의 사회적 효과와 운영 원리에 대한 지역사회내 인식 제고와 소규모 공동체 조직의 협동조합화 유도

2. 경제·사회적 취약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공생발전 도모

-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낙후지역이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 대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돌봄과 배품의 혜택을 제공
 -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해소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호혜와 협력을 이념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활용을 통

- 해 자립적, 주민 주도적 공동체운동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실현
- 시장 수익성보다는 지역 소요(needs)를 반영하는 협동조합이 설립,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약자를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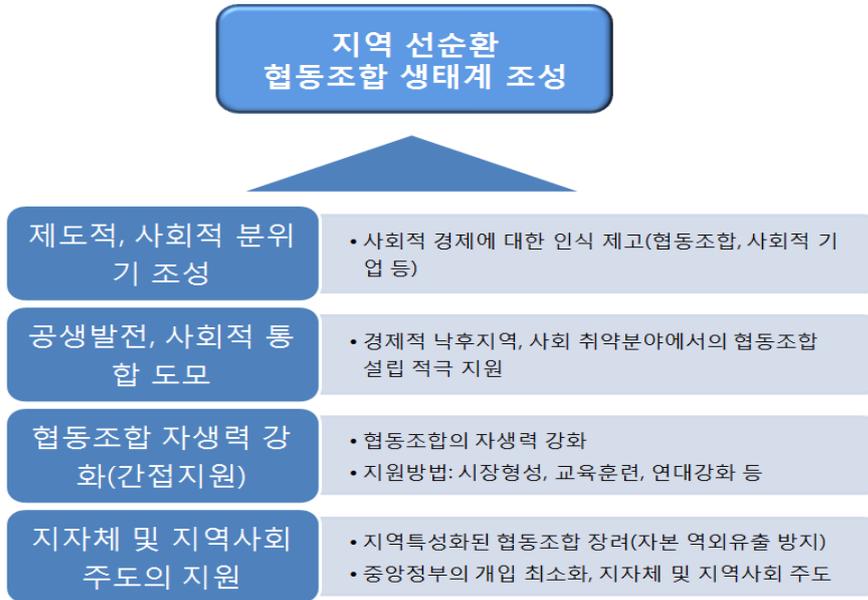
3.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중심의 지원체계

- 협동조합은 특수한 성격의 대안적 기업으로 시장에서 타 조직의 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은 간접지원에 국한
 -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원이란 구도가 수많은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성 보다는 인증요건 충족에 집착하도록 만든 요인이 됨
- 정부지원이 협동조합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자생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에 주력
-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역차별 방지, 시장 형성,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훈련 등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주력
 -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관리와 제도정비, 규제완화, 차별 방지 등에 국한

4.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원체계 수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고, 지역주민인 조합원에 의해 소유·이용되며, 자본의 탈지역(역외유출)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
-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은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

[그림 4-1]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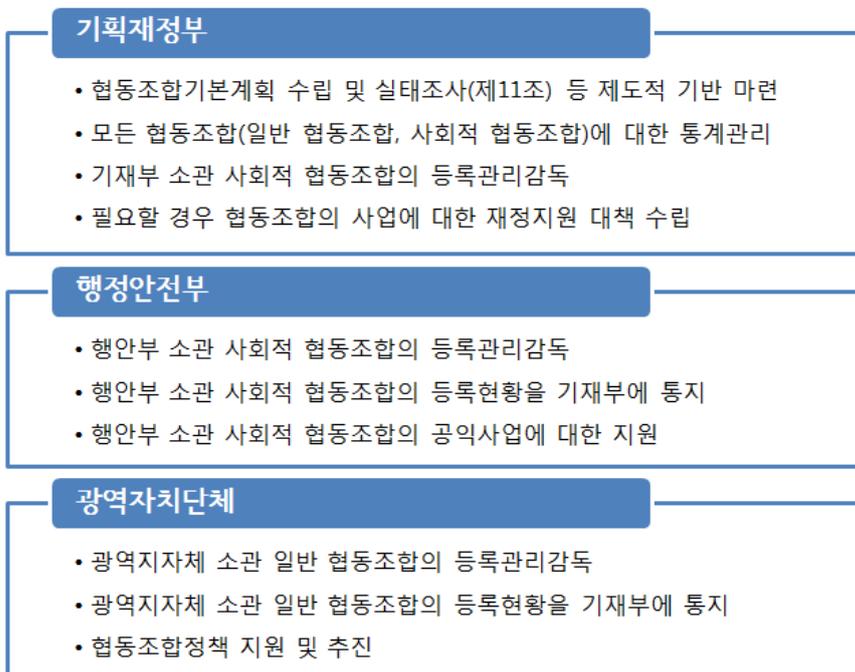
제1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

1. 역할 정립의 틀

-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함
-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이나 전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총괄 역할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등록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임
 - 일반 협동조합의 등록관리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의 허가권은 기획재정부에게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영역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허가권을 위임하였음
 - ※ 소관부처 위임사무(제116조) :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제11조),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제71조), 운영의 공개(제96조), 해산(제102조), 사회적 협동조합 청산사무 감독(제103조제5항), 해산등기의 촉탁(제108조제4항), 설립인가의 취소(제112조),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제114조), 과태료 부과(제119조)
- 따라서 행정안전부도 행정안전부의 조직 미션에 맞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향후 관련 영역에서의 일반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하여 행안부 소관 영역의 탐구, 협동조합정책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공동체사업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그림 4-2]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추진체계



2. 행정안전부 관련 협동조합의 영역

가. 행안부의 조직 미션

- 「정부조직법」(제29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요 미션은 공무원 관리 및 역량 강화,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안전관리정책·재난관리 등이 해당¹¹⁾
 - 정부조직법(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이러한 주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조직은 크게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획조정실, 조직실, 인사실, 정보화전략실, 재난안전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지역발전정책국 등이 존재

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는 행안부의 사업 및 활동

①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전거 활성화

- 대상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녹색교통(자전거)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협동조합
- 예시: 녹색성장 활성화(교육, 공동행동), 자전거 이용활성화(교육, 홍보,

11)

자전거수리, 자전거주차장사업 등), 안전교육강사육성 등

○ 관련 조직: 지역발전국

□ 자전거교육, 오하이오시티 자전거조합(Ohio City Bicycle Co-op)

- OCBC는 미국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시 내부에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지향하면서 비영리, 자원봉사자 중심의 조합형 자전거 교육센터를 운영
- 1995년 클리블랜드 자전거연합(Cleveland Area Bicycle Association)이 자전거 교육을 위하여 중고자전거 순환 및 재이용을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다가 2004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았음
- 현재 3명의 상시직원이 있으며 15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에 있음

□ 자전거수리조합, 소포조합(Sopo Bicycle Cooperative)

- 소포조합은 미국 조지아 아틀랜타시에 설립된 자전거수리조합으로, 자전거 수리, 서비스, 교육 등에서의 형평성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의 보장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비영리법인)
- 소포조합의 가게는 자전거와 관련된 부품, 설비, 전문성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조합원이 그 작업장에 가서 부품을 구입하고 조합원이 직접 수리하는 곳으로, 다른 자전거 수리단체와는 차별성이 존재
 - 수리공구 이용비용은 시간당 5달러이며 부품은 개당 5달러임

② 안전·방재관리

- 대상 : 자연재해, 재난 및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협동조합
- 예시 : 승강기 안전점검, 보행안전도우미(walking school bus), 자율형 패트롤 방법대 운영, 아동안전확인시스템 구축, 안전시설의 구축 및 개보수(특히, 스쿨존 지역) 등
 -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재 자원봉사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할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짐

- 안전사고 예방실천사업 등은 어린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교육수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협동조합화할 경우 교육의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

○ 관련 조직: 재난안전실

③ 공무원 복지 및 청사관리분야

- 대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탁시행하고 공무원 복지 증진 및 교육역량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 예시: 공공기관 시설의 구축 및 개보수, 공무원 생활협동조합, 공무원 교육연수컨설팅 협동조합 설립, 공무원 연구모임 등
 - 공무원 교육연수를 일반 기업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형태로 운영할 경우, 교육훈련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훈련생이므로 본인의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될 수 있음
 - 공무원 생활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친환경 물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가능케 하며 구매단가를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공급
 - 청사관리를 일반 기업(청소용역업체 등)에 위탁하는 대신, 근로자협동조합에 위탁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직원의 월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김
- 관련 조직: 인사실, 청사관리사무소

□ 시설관리 분야의 협동조합들

- 협동조합은 최근 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이 창출
- 이탈리아에서는 시설관리분야의 10대 기업 중 4개 기업이 협동조합임(레지오 에밀리아 푸크서브, 팀서비스, 라 피오리타, 쿠프 라트 등)
- 마누텐쿠프(Manutencoop): 이탈리아에서 시설관리분야로 가장 큰 협동조합으로 2008년도 매출액이 7억 유로였음

- 치클라트(Chiclat): 1953년에 볼로냐에서 결성되어 1970년대 이후 100여개의 조합이 문체 건물 유지보수, 폐기물 수집, 식당서비스, 선적 및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
- 이탈리아의 CNS: 1977년 볼로냐에서 설립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관리, 운송, 배달, 보관 및 청소, 환경, 식당, 관광 등 분야별로 특화된 200개 이상의 조합이 있음

④ 사회통합 및 나눔문화확산

- 대상: 계층간, 지역간 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협동조합
- 예시: 다문화밀집지역 환경개선, 저소득층 생활지역 희망만들기, 다문화 가족 통합사업, 정보격차해소(지역간, 계층간, 장애인, 고령자 등), 나눔문화 교육·홍보

□ 어카운트3(Account3)의 활동

- 타워햄릿(Tower Hamlet)의 빈곤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 온 협동조합으로 1991년 설립
- ① 이민여성을 위한 영어교실 운영
 - 교육에 참여하는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을 걸으며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간단한 대화로 설명하고 홍보
- ② 자동차 학습지도원 양성프로그램
 - 이슬람은 여성이 친척 외의 다른 남자와 차를 타는 것을 금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교습지도원 대부분은 남자였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학습지도원을 양성
 - ※ 영국에서는 운전학습지도원이 독립 자영업자이므로 운전할 줄 아는 여성 20%가 나머지 여성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또다른 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자영을 하여 일자리를 창출
- ③ 보육사 양성직업훈련프로그램
- ④ 노동당정부의 아동빈곤대책(Sure Start)사업을 추진
 - 어카운트3의 "outreach팀"을 동원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가족에게 제공

- 관련 조직: 지방행정국, 정보화전략실, 지역발전국

⑤ 지역개발

- 대상: 일반 농촌지역이나 접경지역, 도서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 예시 :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시행자, 고령자케어시설, 노인능력개발, 정주환경개선, 소득창출사업, 전국정보화마을 상품판촉 등
- 관련 조직: 정보화전략실, 지역발전국

3. 행정안전부의 협동조합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 유사 조직사례1: 비영리법인

1) 정의 및 특징

□ 비영리법인의 정의

-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가리킴(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가능
 - 사단법인은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함

□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 원칙 채택

- 민법에 의하여 법인은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설립되어야 함
 -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개별 주무부처의 관리시스템 존재

- 주무부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적용 운용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 및 재량에 달려 있음
 - 현재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23개 제정되어 있음 (부록 참조)
- 상기 23개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에 따르면 개별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과 관련 업무는 대동소이하며, 관리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음
 -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의 취소
 - 정관변경허가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보고
 -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신고 접수 등
 - ※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에서 특이한 점은 설립허가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칙에 명시하였다는 점임

2) 조직관리시스템(행안부 소관)

□ 법적 근거

-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근거법령은 세 가지임
 - 「민법」 : 민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개념이 규정됨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직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규정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와 관련 시도

지사 간의 비영리법인 관리 권한의 위임을 규정

□ 행안부-시도간 역할분담

- 행안부는 상기 행정권한위임규정(제27조)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 하에 서는 비영리법인 관련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주로 비영리법인의 공간적 활동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여부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록 및 관리감독(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의 주체가 달라짐
-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역할분담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행안부 내 담당부서는 기획재정담당관실임

<표 4-1> 비영리법인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주체	담당 업무 내용
행정안전부	- 비영리법인 관리업무의 총괄 지도 및 감독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시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설립허가, 관리감독권한 - 시도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중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허가권한
광역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 시도 이상인 경우의 법인 설립허가, 관리감독권한 - 시도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중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관리감독 권한

□ 설립 및 감독 관리 절차

-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크게 ① 법인설립허가, ②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③ 정관변경허가 및 사업실적보고, ④ 갱신 및 해산 등의 과정으로 구분됨
- ① 법인설립허가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각종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약력은 3~4개정도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①법인의 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의 원칙 하에서 법인 설립의 허가를 결정해야 하므로 다음의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법인설립을 허가하도록 규칙에 규정
 -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심사는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며, 심사결과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심사통과되어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법인의 일반사항을 기록

<표 4-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대장(서식)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허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사항
		소재지	전화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주소					

②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 법인설립허가 후 법인은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므로 제3자가 법인의 존재와 재산상태 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 정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 이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함
 - 법인은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재산관계의 변동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등기소나 관련 금융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떼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③ 정관변경허가 및 사업실적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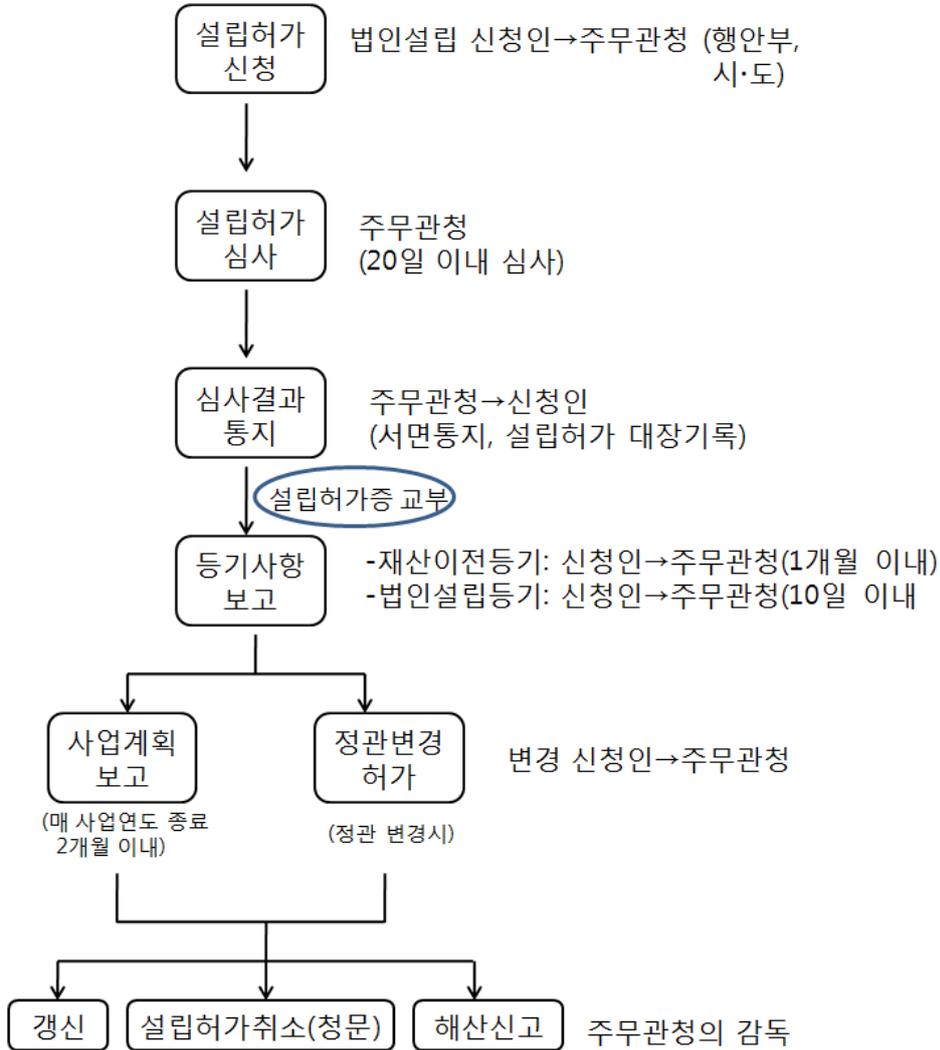
-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허가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1) 사업계획보고와 (2) 정관변경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매해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 한편 정관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④ 갱신 및 해산

-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보고, 정관변경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민법 제37조, 규칙 제8조)
- 한편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문을 하여야 함
- 또한 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할 경우에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마친 후에 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서,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알 수 있도록 함

[그림 4-3] 비영리법인 조직관리시스템



나. 사례2: 비영리민간단체

1) 정의 및 특징

□ 정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1.12 제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의미함(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비영리법인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로의 등록제도 채택

-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지원 선행요건으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은 요건심사를 하여 등록증을 교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는 달리, 등록제도는 주무관청이 재량적 행위를 할 수 없고 요건에 합당하면 등록을 수리해야 함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경우 명시적 요건과 함께 정관심사 등을 통

해 정성적 사업 목적 등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결정함

- 2011. 12. 31 기준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총수는 10,209개이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1,189개,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9,020개임

<표 4-3> 중앙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1,189	7	40	111	113	6	24	199	120	36	8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132	142	41	73	29	7	9	5	6	11
	중소기업청	특허청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방 송 통 신 위	국 가 보훈처	공 정 거래 위	금융위	국가인권위
2	23	1	2	10	11	7	7	4	1	2

출처: 행정안전부, 2011, 내부자료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직접지원, 간접지원 모두 추진되고 있음
- 직접지원으로 매해 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방식(경쟁)을 통해 추진
 -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인)의 심사·선정
 - 1999년 이후 100억원('03년 이전 150억)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2009부터는 어려운 국가재정 사정상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1)

- 간접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규정된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행정지원 등이 있음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시행령 제14조) :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시행령 제13조 2항)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 조직관리시스템

□ 법적 근거

-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 근거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음

□ 중앙부처-행안부-시도간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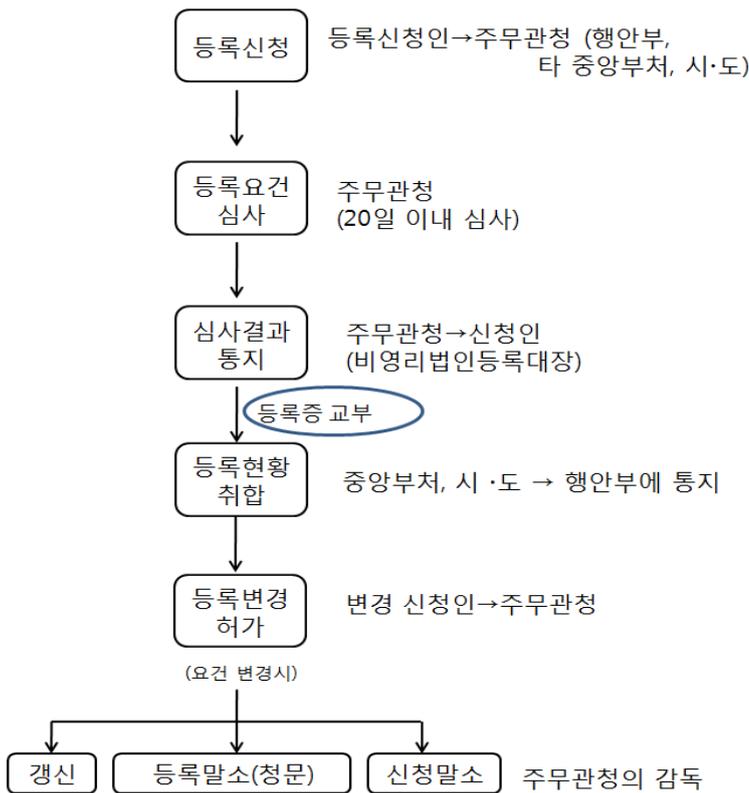
-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① 등록·변경·말소와 ② 지원사업으로 구분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분장은 업무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주무관청에서 단체 등록에서부터 관리감독, 지원까지 담당
 - 주무관청은 등록기관(법 제4조)에 따라 결정
 - 중앙부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해당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 단체 명칭의 변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시·도 변경), 주된 사업의 변경 시 등록변경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10일 이내 결과 통지)

○ 등록사항의 말소

-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이 등록말소 가능
-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행
- 등록 말소가 확정되면 관보 또는 시·도 공보에 말소사실을 게재하고 행안부장관에게 통보

[그림 4-4] 비영리민간단체 조직관리시스템



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시스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법 제7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회의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법 제7조 제3항)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시행령 제6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①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②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③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등을 결정
-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해 변경되기도 함
 - 공익사업의 정의는 국가나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보완·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전국적 또는 시도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시행령(제5조)로 포괄적, 추상적으로 정의내려져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유형과 내용은 매해 사회변화와 현황에 따라 지원사업 공고할 때 결정됨

<표 4-5> 2012년 공익사업의 내용

사업영역	사업 예시
①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살리기, 다문화 가정 지원, 출산장려 등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재능나눔 등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기부문화 실천 등
③ 국가안보 증진 및 사회통합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등
④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문화 정착	재해 예방, 재난구조 활동, 교통사고줄이기 등
⑤ 건강한 사회 및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글로벌 에티켓 함양, 도덕성 회복, 자살예방 등
⑥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친환경 보전, 절전형 조명 등
⑦ 국제교류협력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봉사, 국제 네트워크 협력 등

□ 사업계획서의 제출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방문,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화면상단 [고객민원] → [고객센터] → [온라인민원]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방문, 등기우편,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기관 선정

- 공익사업신청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8조)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
 - 자부담은 자율화하되 20%까지 차등가점(4점) 적용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에서 제출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 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사도에 중복 제출한 사업인 경우

□ 사업평가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그림 4-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일정



*매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 유형 변경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다. 행정안전부 소관 협동조합의 조직관리시스템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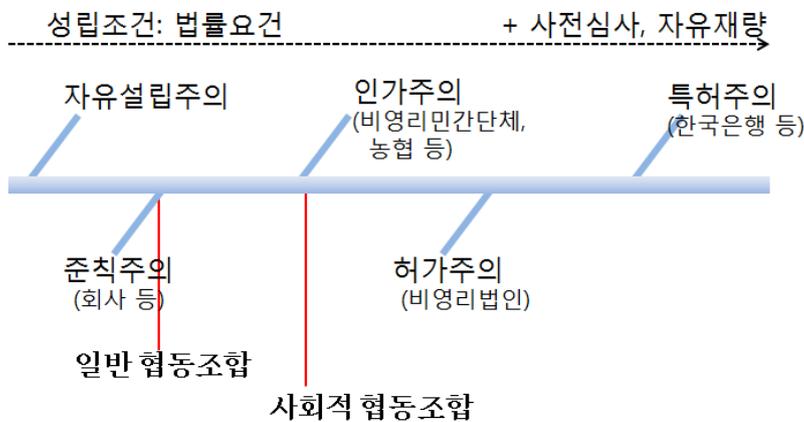
1) 현행 제도

□ 협동조합 유형별 관리시스템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일반적 협동조합은 준칙주의, 사회적 협동조합

- 은 인가주의를 채택하여 설립절차를 구별하고 있음
-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에 신고하고(제15조)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등기 등록만 하면 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제19조)
 -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하며 권한위임에 의해 해당 소관부처(즉,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인가 관리를 해야 함

[그림 4-6] 법인 설립의 원칙



□ 법인의 개념 및 유형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함
 - 즉,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하며(행위능력)
 - 또한 법인의 목적에 따른 행동과 그 행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인이라는 기관에 지워지는 것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를 가할 경우 법인이 배상의 의무를 짐(불법행위능력)
 - 따라서 법인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법인 설립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해당 법인에 대한 공적인 권위(authority)를 부여해야 하므로 정부 개입에 의한 행정처분이 필요

- 법인 설립의 방식은 크게 특허주의, 허가주의(인가주의), 준칙주의, 자유설립주의 등이 존재
 - 특허주의가 가장 강력한 정부개입 형태이며, 자유설립주의는 정부개입이 거의 없음
 - 특허주의: 특정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로서 개별입법주의로, 한국은행(한국은행법) 등이 특허주의에 해당
 - 허가주의: 특허주의와 준칙주의의 중간적 형태로,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의로, 허가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관청에 자유재량이 존재하여 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우리나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허가주의에 해당)
 -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주의로, 관청의 사전심사가 있다는 점에서 준칙주의와 다르나 요건심사라는 측면에서 준칙주의와 유사(중소기업 협동조합, 농협 등이 해당)
 - 준칙주의: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로, 민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민사회사(민법 제39조),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이른바 회사(상법 제172조)가 준칙주의를 채용
 - 자유설립주의: 법인설립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단체가 설립이 되면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주의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31조(“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설립주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¹²⁾

○ 설립절차

① 일반적 협동조합

- 발기인 5인 이상 모집→정관작성→설립동의자 모집→창립총회 의결→관할 시·도지사 설립신고→이사장에게 사무인계→출자금납입(현물출자 가능)→설립등기(인가절차 없이 등기가 가능하며, 최소자본금 규정 없음)

② 사회적 협동조합

12) 거의 모든 국가가 자유설립주의는 배제하고 있으며 스위스가 비영리사단법인에 한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발기인 5인 이상 모집→정관작성→설립동의자 모집→창립총회 의결→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 신청(60일 이내 인가)→이사장에게 사무인계→출자금 납입(현물출자가능)→설립등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허가권이 기획재정부에 존재(법 제85조, 제86조) 하나,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허가권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권한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감독권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연합회 관련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단,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경우, 주된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

<표 4-6> 유사 단체의 등록·관리시스템 비교

구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근거법령	민법 제3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원칙	허가주의(자유재량권 있음)	인가주의(법적 요건만 충족시 자동적 등록)	신고주의(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 관리 권자	전국 단위: 법인의 활동영역별 중앙부처 구분(「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국 단위: 영역별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도 (기재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안)에서 중앙부처로 위임되었음 - 만약 시도로 재위임할 경우 비영리법인과 같은 조치 필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1개 광역단위: 허가, 관리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개 광역단위: 시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총괄팀의 업무	자료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취합, 지원계획 수립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공익사업의 추진 ※ 지원사업선정 관련 온라인시스템 구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취합 - 공익사업 추진 	
행안부 내 총괄팀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안부 민간협력과	시도	행안부
비고	중앙부처 차원의 총괄부서 없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상법상의 회사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회사 설립희망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직접 제출

2) 행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관리시스템

가) 법적 근거

-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나) 행안부-중앙부처(기재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업무는 ① 등록·변경·말소와 ② 지원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행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관리시스템은 동일하게 관계 중앙부처의 장관의 등록을 규정하는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관리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하면 됨
- 다만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가감독권을 행안부가 행사하나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지사도 그 권한을 위임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음
- 사실상 행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 현실에 맞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협동조합이므로 단일 광역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인가권을 시·도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
 - － 이 경우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비영리법인의 행안부 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제27조가 존재하므로, 이 조항에 행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면 됨
- 행안부의 시도지사로의 권한 위임을 결정할 경우에, 행안부와 시도지사가 협동조합의 활동 공간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됨
 - － 행안부: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행안부가 인가 및 감독을 시행
 - － 시·도지사: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범위가 1개 광역지자체일 경우

해당 조합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인가 및 감독을 시행

-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그림 4-7] 사회적 협동조합의 허가관리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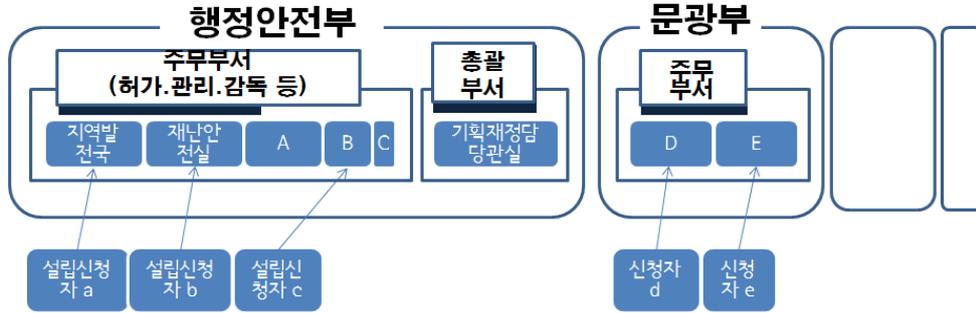


다) 등록·감독의 조직체계

- 유사사례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존재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설립 신청자가 자신의 활동영역과 지리적 범위에 따라 주무관청(허가관리권자)을 탐색하여 설립 신청을 함
 - 지리적 범위가 2개 시·도 이상일 경우, 단체의 주요 활동 특성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에 단체가 신고절차를 시작
- 즉, 비영리 관련 단체가 행안부 소관일 경우에는 행안부의 각 관련 부서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등록서류를 접수함
 - 예를 들어, 재난안전 관련 비영리법인은 재난안전실에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지역활성화 관련 비영리 관련 조직은 지역발전국에 서류를 접수
 - 그 이후에 행안부 내 하위 관련 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부서가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임
 - 즉, 접수에서부터 각 관련 하위부서가 담당하고 허가, 관리, 감독을 수행
 - 총괄부서의 주요 업무는 관련 하위부서에서 보내오는 현황통계만 감독 관리

[그림 4-8] 전국 단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시스템(현행)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행안부 “민간협력과”가 총괄부서로 되고, 민간협력과는 등록관리에 덧붙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도 공모선정함

□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록관리시스템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와 유사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리권을 현행 비영리법인·민간단체와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

※ 시도로 재위임할 비영리법인과 같은 조치 필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 다만, 행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총괄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60%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안부 총괄팀에서 기획,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총괄부서-주무부서간 관계에 따라 관리지원시스템의 유형이 다름
- 비영리법인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과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통합형” 시스템 중에서 선택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관리지원시스템은 “분산형”임

- 총괄부서는 “서무형” 총괄부서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

과에서 추진

- 비영리법인의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담당관실은 행안부 내 다른 기획예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영리법인의 취합부서로 “서무형”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담당
- 현황통계 관리 등만을 수행하고 각 관련 부서가 독자적인 비영리법인의 지원체계를 갖는 형태임

○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지원시스템은 “통합형” 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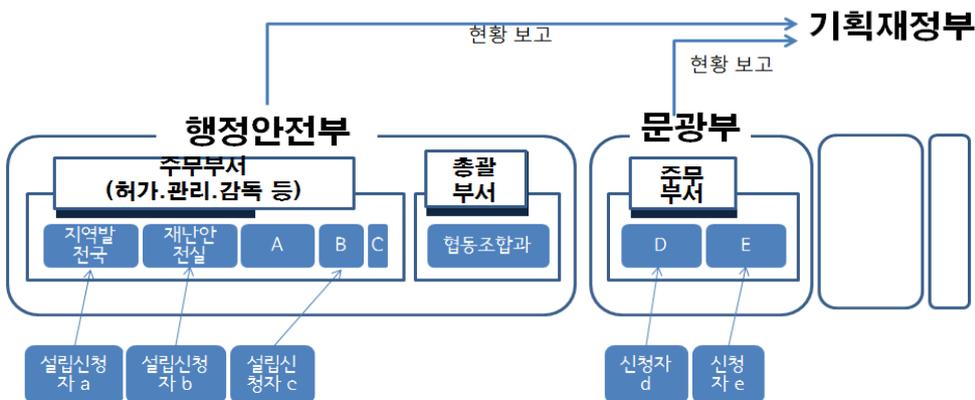
- 비영리민간단체의 총괄부서인 민간협력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육성을 위해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과로 적극적인 총괄부서의 역할을 수행
- 단순히 현황자료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

<표 4-7> 정책추진시스템의 유형 및 장단점: 분산형 vs 통합형

구분	“분산형” 관리시스템	“통합형” 관리시스템
특징	- 총괄부서: 자료 취합 - 주무부서: 소관 영역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록관리시스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 총괄부서: 자료 취합,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 주무부서: 소관 영역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록관리시스템
장점	- 주무부서의 해당 사업영역에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 - 전문성에 기반한 인가업무의 효율성 제고 - 협동조합 특수적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존 중앙정부사업을 활용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도 동시에 홍보가능 - 추가적인 인적 투입 필요 없음	-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일괄 추진 -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서 주무부서간 조정 필요 없음
단점	-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지원(홍보, 교육)에 대한 일괄 추진 어려움(각 과별로 일정 조정 필요)	- 총괄부서의 전문적 역량 강화 필요 - 총괄부서의 인적 투입 필요

- 분산형과 통합형 관리시스템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행안부는 “분산형” 관리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
 - 협동조합은 사업영역에 따라 재난안전기술에서부터 정보기술, 지역개발기술 등 그 전문성이 매우 상이하므로, 총괄부서에서 해당 사업영역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힘들거나 총괄부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에 장기간의 시간과 재원이 소요될 것임
 - 분산형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괄 교육 등의 일반적 지원은 각 주무부서별로 일정 조정으로 달성 가능
 - 결론적으로,
 - 주무부서: 허가권 및 관리감독권 행사, 지원계획의 수립
 - 총괄부서: 현황정보의 취합, 기획재정부에 정보 전달
 - 예를 들어, 지역활성화 관련 설립신청자 a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발전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지역발전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협동조합 등록증을 교부

[그림 4-9] 행안부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관리시스템(안)



※ 비영리법인의 경우처럼 행안부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공익사업을 추진한다고 결정했을 경우 “서무형” 총괄팀인 협동조합과를 구성(또는 TF팀 구성)

4) 관련 서류 및 절차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류(시행령 제3조제1항)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임원 명부
 - 설립동의자 명부(5인 이상)
 - 출자금 납입증명서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등록증”을 교부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 등록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분기별로 시·도지사는 행안부에 통지하고 행안부는 기재부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을 통지하도록 함

○ 정관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등록변경 허가를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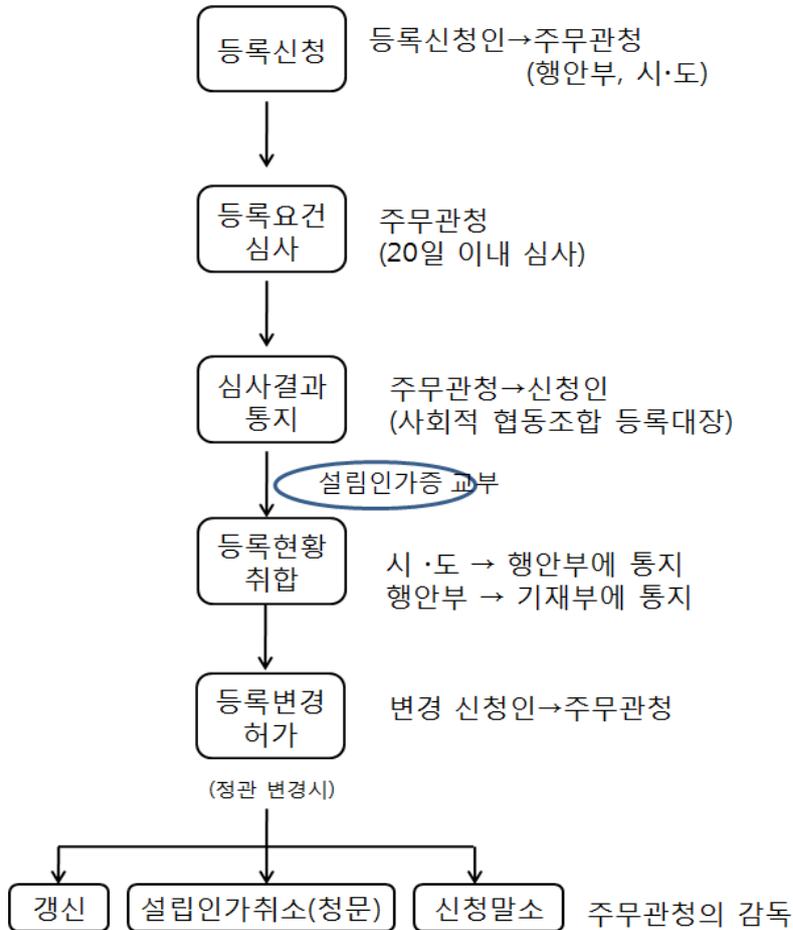
- 등록단체가 다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변경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10일 이내 결과 통지)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대차대조표(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
 - 공고 또는 최고(催告)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

-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 설립인가의 취소

- 법 제112조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음과 같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기재부에 통지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조사·자료제출 등 및 시정명령)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시행령에 정해져있는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설립인가 취소가 확정되면 관보 또는 시·도 공보에 말소사실을 게재하고 행안부장관에게 통보

[그림 4-10]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관리시스템



3) 행안부 소관 협동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대상 정부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규제도 동시에 적용될 것임
-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7대 기본원칙 중 하나인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당, 정치인 등과의 일정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을기업 본연의 목적(조합원 이익 추구, 지역활성화 등)을 달성하도록 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탈법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마쓰오 다다스 등(2006)은 일본 마치즈쿠리운동에서 시민사회경제의 변질을 언급

- Y복지관 사례: 이념 강요형
 -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소”를 일본 최초로 운영하여 장애인복지운동의 선진사례로 주목받았음
 - 간부가 하는 일에 의문을 품는 사람에게는 이틀 동안 감금하고 자기비판서를 쓰게 하고 “분파행동”, “배신행위”라는 이유로 직원을 잇달아 처분 → 노동쟁의 제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른 관련 단체와의 관계 단절
- I생협 사건: 경제적 비리유형
 - 오사카의 I생협 부이사장이 본인 소유지를 생협에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토지매입 자금의 대출금을 갚고, 생협의 3억엔 호텔수준 연구숙사를 사저로 거주, 협동조합 관련 시설(하와이 맨션 등) 및 입원비용의 사유화
 - 3명의 내부 고발, 2명의 해고 → 손해배상재판, 해고관련 재판 → 이사장의 교체 등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정치적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규정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의 취소와 인적 규제(공직선거 관여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를 규정하고 있음
 - 조합장 및 임원 선거 등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38조)
 - 외부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9조)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제111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제112조)
-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벌칙(제117조 제3항):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또는 청산인)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협동조합의 (정치적) 자율성, 독립성, 내부의 민주적 운영 여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의 임의적인 행동을 파악하기 힘들며 조합원 개인이 조합장의 전횡 등을 제어하기도 힘든 상황은 대부분일 것임
- 따라서 협동조합이 본연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해서 조합의 이해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때 조합원이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안부는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 해당 담당부서에 민원시스템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하여 행안부는 소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민원시스템이 존재함으로써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원에 고지하고 상시 운영

4. 마을기업 등 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가. 필요성

- 협동조합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역공동체 사업의 법인화를 촉진
 - 마을기업 등의 추진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수익배분 등 각종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마을기업의 사업체(경영체)적

성격을 강화

-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 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협동과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이점을 통하여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
 -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도시화 또는 고령화되어 가는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회복에 기여

나.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사업의 추진실태

1) 정책현황

□ 중앙부처의 정책현황

- 현재 주민공동체사업에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사업” 등 3부처의 사업이 주종을 이룬 채, 제각기 분산 추진

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개념 :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사업
- 행안부는 ‘10년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란 명칭으로 공동체사업을 육성하다 ’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 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생활지원·복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10년 총 184개 마을기업 선정 후 사업추진 : 지역자원 활용형 118

- 개(64%), 친환경 42개(23%), 생활지원·복지형 24개(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년도 사업으로 재선정 83개, 연장운영('11.6월 까지) 43개, 자립운영 19개 등 14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
- '11년은 신규 선정단체 371개, '10년 선정단체 중 운영 중인 145개 등 총 516개 마을기업이 현재 운영 중
 - '12년은 신규 선정단체 237개, '11년 선정단체 중 재선정 264개 등 총 501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
 -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1의 개념으로 첫해에 5,000만원(100%), 2년째 3,000만원(60%)을 지원하며 기타 행·재정지원과 중간조직 지원 등을 제공

<표 4-8> 지역별 마을기업 현황(2012년 현재)

년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011	현황 (516개)	66	30	32	28	18	18	9	83	43	15	28	33	37	30	37	9
2012	신규 (237개)	12	10	15	14	11	11	5	18	20	22	26	20	13	13	20	7
	재선정 (264개)	44	27	24	10	12	9	5	46	26	7	6	8	15	16	7	2
	현황 (501개)	56	37	39	24	23	20	10	64	46	29	32	28	28	29	27	9

출처 : 행정안전부 자료(2012)

②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법 제2조)
- 고용노동부는 '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인증제를 도입

- 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 중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 '12년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656개이며 2014년까지 1,000개 육성을 계획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운영비 대부, 법인세 감면(4년간 50%), 4대 보험 지원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제공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사 인증요건이 미비되었으나 장차 요건 보완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

<표 4-9>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2012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56	156	41	18	35	27	20	113	34	27	19	30	26	36	27	13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2012)

③ 농림수산물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 농어촌공동체회사의 개념 : 농어촌지역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기업 혹은 주민주도의 지역활성화사업을 지칭
-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추진

- 농어촌 삶의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10.7.23)을 통하여 설립 근거 마련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은 '11년 총 54개 사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1개소당 50백만원)하고 있으며, '15년까지 5,000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 밖에 문광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타 부처에서도 유사 성격의 공동체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 중

<표 4-10> 부처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 현황

관련부처 (추진연도)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행정안전부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개칭하여 사업 확대 추진 2011년 6월 현재 539개 마을기업 선정,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2007)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 2012년 현재 656개 사회적기업 인증, 각종 경영, 재정, 홍보사업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 조직지원 - 농촌형 마을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12년 현재 54개 기업 지원
지식경제부 (2010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 1차 시범사업 이후 사업 종료
문화관광부 (2010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 노동부와 MOU체결을 통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보건복지부 (2000년)	자활공동체 사업	- 지역자활센터가 중심, 자활공동체로 창업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제도 등과 연계

□ 자치단체의 정책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직접지원, 간접지원,

제도정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 광역지자체 사업은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사업”, 충남도의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제”, 경북도의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이 있음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핵심정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완주군, 순천시 등이 대표적 사례

※ 완주군 사례

- 완주군은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의 선도적 자치단체로서 폐교를 개조,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운영
- 농촌형 ‘파워빌리지 마을회사’ , ‘중간지원형 ‘농촌살림연구소’ 등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
- 사례 : 안덕마을 건강·힐링 농가레스토랑, 7학년5반 다듬이 할머니 공연단, 생태휴집 만들기 CB사업단, 행복농장 만들기, 완주자활 신토불이 황토사업단, 봉동 생강고을 나눔가게, 1社-1大學 CB 활성화 프로젝트, 구도심 재창조, 비비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 순천시 사례

- 기존 재정사업 및 공익사업(NGO 지원사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정책을 전환
- 해외연수와 리더양성교육을 통해 개인자립형, 지역복지형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
-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에 전담조직 설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공동체사업을 육성
- 사례 : 여성문화회관 동아리봉사단, 활기찬 실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감성마을 메주방, “자연밥상” 운영, EM 녹색실버가게, 덕연동 자전거 CB사업단, 순천사랑빵 판매사업, 순천 '시니어공동체 판매장' 등

2) 마을기업 실태분석¹³⁾

○ 총괄현황

- 조사대상기업 : ‘10년 마을기업 선정 대상 150개 시군구, 172개 기업
- 정책유형 : 지역자원활용형 58.2%, 친환경녹색에너지형 24.4%로 나름대로 지역밀착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반면 생활지원복지형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되어 17.4%에 불과
- 사업분야 : 경제 26.7%로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밖에 환경 16.9%, 문화관광 15.7%를 차지
- 지역분포 : 동 47.7%0%, 면 38.3%, 읍 14.0% 등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고르게 분포

○ 조직실태

- 조사대상 172개 마을기업(‘10년 12월 기준) 중, 영리법인 2.9%, 비영리법인 33.7%, 비영리단체(주민조직) 40.1%, 비영리단체(시민단체) 19.8%로 구성
- 주민조직 중에서도 마을(운영위원회)회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30개소로서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1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 설립이 용이한 조직형태임
- 주민조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급조에 용이한 점과 행안부 정책목표상 주민공동체 구성을 강조한 점에 기인
- 다음으로는 많은 조직형태는 영농법인으로 16,3%를 차지하며 주로 농촌지역의 마을기업이 해당
- 전체 마을기업 중 법인격을 가진 기업은 36.6%에 불과한데 법인격 취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초기에 마을기업의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법인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임

13) 실태분석은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마을기업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한 것임(김선기 외, 2012)

- * '11년 말 통계로는 559개 중 239개(42.8%)가 비법인
 - 기본법이 없었기 때문에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은 거의 전무한 실
 정임

<표 4-11> 마을기업의 조직유형

구분		사업수	비율
합계		172	100
영리법인	주식회사	2	1.2
	유한회사	1	0.6
	합자회사	1	0.6
	기타	1	0.6
	소계	5	2.9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1	0.6
	사회복지법인	11	6.4
	종교법인	2	1.2
	문화예술법인	1	0.6
	영농조합법인	28	16.3
	기타	15	8.7
	소계	58	33.7
비영리단체* (주민조직)	마을(운영위원회)	30	17.4
	상인회	3	1.7
	청(장)년회	3	1.7
	부녀회	8	4.7
	새마을조직	5	2.9
	노인회	3	1.7
	주민자치위원회	4	2.3
	기타	13	7.6
	소계	69	40.1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11	6.4
	문화예술단체	3	1.7
	환경단체	1	0.6
	자원봉사단체	10	5.8
	기타	9	5.2
	소계	34	19.8
기타	6	3.5	

○ 운영실태

- 설립시기 : 37.8%가 '09년과 '10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어서 운영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23.8%는 '10년 공모제를 통하여 출범한 기업
- 인력구조 : 영리법인은 보조금지원 인력비율이 2.9%로 매우 낮은 반면, 비영리법인은 22.1~37.0%로 보조금에 상당히 크게 의존
- 재정구조 : 업체당 연수입은 1억원 정도이며 그 중 영업수익이 16.1%에 불과하고 운영을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
- 영업소재지 : 83.7%가 사업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지역밀착성은 높은 편임

○ 유형별 실태

- 사업유형별 실태 : 지역자원활용형은 영농조합법인(24%), 친환경녹색에너지형은 마을회(14.3%), 생활복지형은 사회복지단체(23.3%)가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부문별 실태 : 노동 및 교육부문 사업은 전체인력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자체 영업수익이 전무한 실정이며 문화관광부문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매우 높음
- 지역유형별 실태 : 도시는 환경(32.1%), 경제(19.2%), 농촌은 경제(36.7%), 문화관광(23.3%) 등의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고, 도시는 사업주체가 다양한 반면, 농촌은 마을운영위원회와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의 주류

3) 정책체계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 중앙부처별로 지역공동체사업 관련 정책이 역할분담이나 통합·조정 과정이 없이 다양한 형태로 분산 추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대표적 중복 사례로 성격이 매우 유사하지만 사업내용과 지원내역은 상이
- 법인격 취득의 어려움으로 비법인이 많아 법률행위 수행이 제한되고 보조금 수령 및 관리 등에 책임성이 저하
 -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및 환경자원의 보존 및 활용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넓은 영역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법인화가 곤란
 - ※ 현재 마을기업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준법인)로 법인격을 대체
-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활성화사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차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자생력도 취약해지는 원인이 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와 여건을 도외시한 무리한 공모사업의 확대로 인해 부실한 기업을 양산할 우려
- 초기단계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부지원금의 상당 비중이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어 지원이 중단·축소될 경우 공동체사업의 필수조건이 자립성이 우려

다.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활성화

1)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설립 촉진

- 마을기업의 선정 및 재선정과정에서 사업체의 법인화와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유도
 - 법인화의 의의 :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정관 등 단체 운영원칙 마련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최소 자격요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공모제

지원방식에서 지원금만을 노리는 신생 설립단체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

-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의의 : 행안부의 마을기업이 태생적으로 지역 공동체 복원이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이므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의 운영방식은 공동체 형성에 기여

- 협동조합은 전형적인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인 마을기업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사업체 조직임
 - ① 대안적 회사법 : 상법상 포함되지 않는 기업조직에 법인격 부여
 - ② 설립요건 대폭 완화 : 본질적으로 소규모인 공동체사업의 법인화에 기여
 - ③ 수익의 일부 적립 :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
 - ④ 1인 1표주의 민주적 절차 : 지역공동체사업의 의사결정에 적합
- 마을기업은 별도의 근거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행안부의 연도별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시행지침에 마을기업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유도
 - ① 1안 : 마을기업 선정 대상에 사업체의 법인격 취득 및 자기자본 출자 비율(자부담비율)을 의무화
 - ※ 마을기업은 자본과 인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출자 조합원이 5인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함
 - ② 2안 : 마을기업 평가 및 재심사기준에 신규 사업체의 법인격 취득과 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등 협동조합형 조직에 대한 가점 부여
 - ※ 현 평가기준 및 배점 : 공동체구성 10점, 사업계획 적절성 10점, 재정건전성 20점, 자립경영 가능성 30점, 일자리 창출 30점

2) 마을기업에 적합한 협동조합 사업분야 발굴·육성

□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사업분야 발굴

-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은 개념과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분야와 대상 사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은 ①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고 ② 마을기업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대상사업을 발굴

① 협동조합의 원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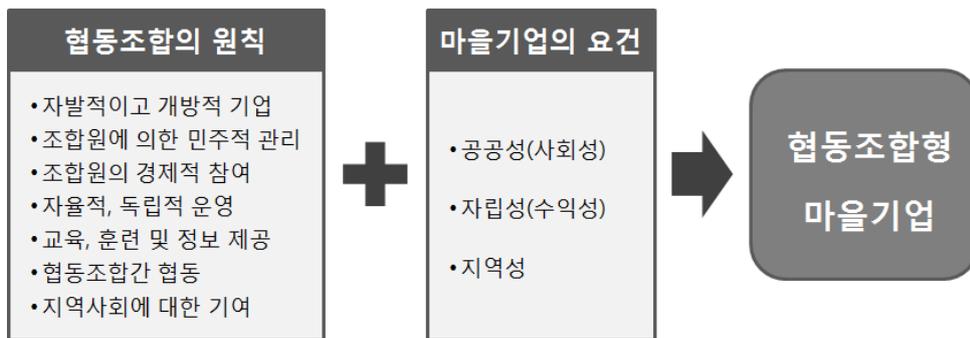
- 자발적이고 개방적 가입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1인 1표 주의)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적, 독립적 운영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간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② 마을기업의 개념적 요건(김선기, 2009; 2011: 9-10)

- 공공성(사회성)
 -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 실현
 - 적정이윤 추구, 착한 가격 실현, 이익의 사회 환원
- 자립성(수익성)
 - 최소한의 수익모델 구비
 - 경영수익을 통하여 사업의 기본운영 가능
- 지역성
 -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지역자원 활용을 사업화
 - 지역주민 주도-지자체 지원

-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사업의 운영자이자 이용자
- 협동조합이 도입되면 생산자, 소비자, 이용자, 근로자가 주축이 되는 다양한 분야와 1차, 2차, 3차 산업 및 이들 간 상호 융복합화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며 관련 분야의 마을기업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현재 임시로 조직화된 법인격이 없는 임의조직의 추진 주체(예 : 각종 위원회, 협의회, 부녀회, 사업단 등)의 협동조합 전환 촉진
- 행안부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업영역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각 분야별 협동조합 도입이 가능한 사업을 리스트화하고 협동조합 설립 수요단체 현황(신규 설립단체, 협동조합 전환 희망단체 등)을 조사
 -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원칙과 마을기업의 요건에 공통으로 부합하는 대상사업부터 협동조합 도입 또는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그림 4-11]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성격



<표 4-12> 협동조합형 마을기업 대상분야와 사업(예시)

분야	사업예시	비고
농업·농촌 활력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	• 로컬푸드 협동조합연합체로 발전
	귀농귀촌 협동조합	• 정보제공, 교육, 택지구입, 주택건설, 영농지도 등
	농산어촌 체험관광	
	축산물사육농가 생산자 협동조합	• 시장교섭력 제고
	임산물 채취농가 생산자 협동조합	
	체험농가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	
	도시민 텃밭분양	
	농작업단 운영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목욕탕 운영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재래시장 빈집포 활용 청년창업	• 일자리 창출사업 연계
	재래시장 유통·직판 사업	
	시장 상인회 협동조합	
	마을(동네) 음식업·슈퍼마켓 협동조합	• 식재료·판매품 공동구매, 매장 공동운영
	수공업업(목공예, 도자기 등 향토산업) 협동조합	• 기능보유자 참여, 공동 브랜드 개발·판매
	아파트 부녀회 소비자 조합	
건물 경비, 수리, 관리사업		
사회복지	지역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 전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시니어 클럽 등 고령인구 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공동 육아·보육 돌봄서비스	
문화·교육· 예술	시민문화동호회 협동조합	
	생활체육단체·동호회 협동조합	
	상설공연(연극, 오페라, 관현악 등) 협동조합	
	지역 축제, 이벤트 사업	
	청년층 교육일자리 협동조합	• 청년층 일자리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 학생과 학부모 참여
	교육용품(교복, 교재, 참고서 등) 재활용사업	
	방과후학교, 주말교실 참여단체 협동조합	
환경·에너지 ·재활용	환경관련 교육단체 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보급사업	
	자전거 임대·수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사업	
	폐자원 재활용 및 임대사업	• 가구, 가전제품 헌옷, 장난감, 도서 등
기타	마을기업·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협동조합화
	공공부문 위탁사업	• 주차장 관리, 공원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

□ 마을기업 사업영역 및 유형 재분류

- 마을기업에 협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마을기업 선정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①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②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태양열·자전거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③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표 20>의 협동조합형 마을기업 대상분야와 사업(예시)을 참조하고,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설립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3대 유형, 8대 사업의 분류체계를 개편
 -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전체의 58.2%) 지역밀착성이 크며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지역자원 활용형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
 -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강하거나 공공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성격이 강한 생활지원·복지형 사업(17.4%)은 단계적으로 축소
 - 지역자원 활용형 중에서 공공부문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 체험, 이벤트 등 관련 사업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 영역을 분리
 - 공공부문 위탁사업은 내용별 분류라기 보다는 사업형태별 분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세부유형에서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재분류
 - 생태계 보전사업은 당초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되었으나 사업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폐지

- 협동조합의 도입으로 향후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교육·문화사업을 추가 신설
-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의 육성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간지원조직형을 신설
- 향후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 숫자가 늘어날 경우 기존 유형분류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류가 곤란한 특수한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타 유형을 별도로 분류

<표 4-13> 마을기업 유형분류의 개선(안)

대분류	소분류	조정사항	
지역자원활용형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 활용사업	⇒ 유지	- 농·수·축산물 등 자원 생산 및 가공 포함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유지	- 음식업, 유통업 포함
	공공부문 위탁사업	⇒ 폐지	- 사업내용에 따라 재분류
관광·체험·교류형	관광·체험사업	⇒ 신설	
	축제·이벤트사업	⇒ 신설	- 공공부문 위탁사업 중 관련사업 포함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유지	
	녹색에너지 사업	⇒ 유지	
	생태계 보전사업	⇒ 폐지	- 기타 유형으로 전환
생활지원·복지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 전환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유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전환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유도
	교육·문화사업	⇒ 신설	
중간지원조직형	교육, 홍보, 컨설팅, 정보, 마케팅, 디자인 등 지원사업	⇒ 신설	
기타 유형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사업	⇒ 신설	

3) 협동조합을 활용한 마을기업간 지역별, 업종별 연대 지원

- 자치단체별, 권역별로 마을기업협의회 구성 유도
 - 시도별 또는 시도내 권역별로 마을기업이 상호 연대하는 마을기업협의회를 구성(예 : 강원)하고 상호 출자를 통해 마을공동체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기업펀드를 조성하여 마을사업에 투자
- 시도별, 권역별 동종 업종 마을기업연합체 형성, 협동조합화 추진
 - 시도별, 권역별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연합체를 형성하여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

제3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1.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지원 추진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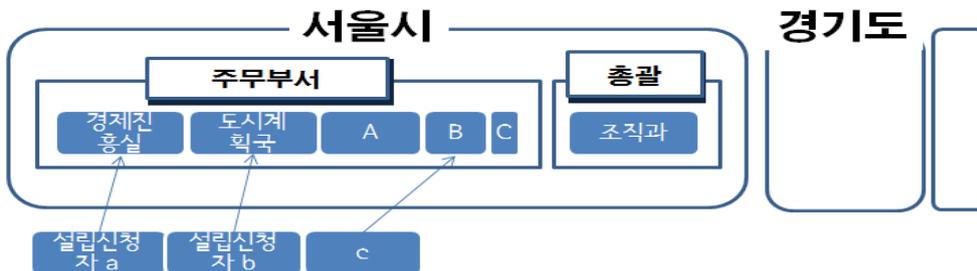
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관련 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업무

- 기념일 : “협동조합의 날 관련 행사 실시“의 책무(§12)
- 설립 : “협동조합등 설립신고“ 관리의 책무(§15·72)
- 정관 : “협동조합등 정관변경 신고“ 관리의 책무(§16·72)
- 합병등 : “협동조합등 합병·분할·해산 신고“ 책무(§56·57·83)
-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지원업무

나. 자치단체 협동조합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협동조합 관련 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직정비 체계가 필요
 - 현재 협동조합과 유사한 조직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주요 활동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될 경우 해당 시·도에 신고접수하도록 되어 있음
 - 설립희망자는 시군이 아니라 시·도에 직접 접수
 - 시·도 내 접수부서는 해당 단체의 활동영역에 따라 소관 조직에 직접 접수
 - 시·도 내 해당 부서는 접수된 것에 대하여 검토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음
- ※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수준의 정해진 지원사업은 없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행안부 차원에서 진행

[그림 4-12] 시·도 소관의 비영리법인 등록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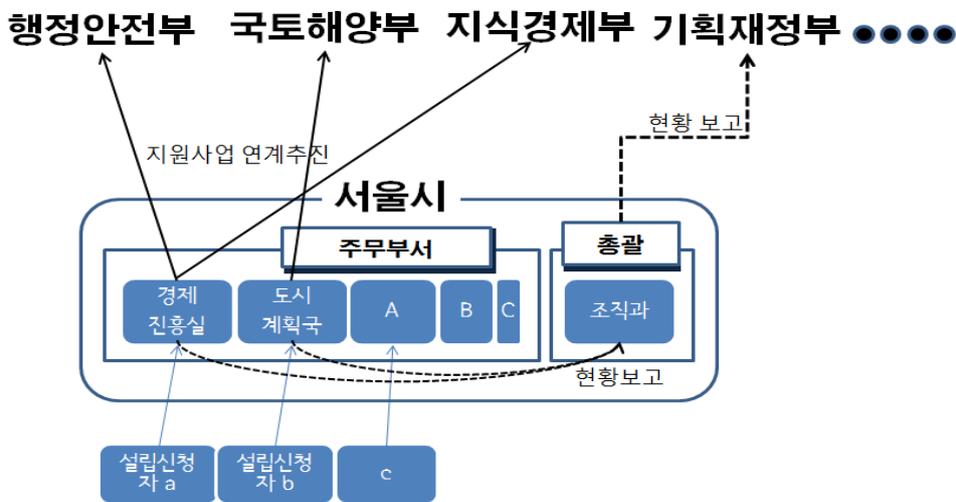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시스템은 행안부 내부의 정책추진시스템과 동일한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분산형 시스템의 장단점은 앞서 <표 14>와 같음
 - 특히,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의 성패가 중앙정부사업의

선정공모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영역별(즉, 재난안전분야, 지역개발분야, 녹색성장분야 등)로 다기화되어 있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등)의 사업선정공모 및 지원 계획을 적시에 알아낼 수 있는 각 사업주무부서별로 협동조합 감독 및 지원을 대응하는 것이 좋음

- 등록관리를 하고 기획재정부에 현황자료를 제출

[그림 4-13] 시·도 소관의 협동조합 등록관리시스템



※ 설립신청자는 시·군이 아니라 시·도에 직접 접수

-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협동조합 관련 총괄조직 정비 및 인력 배치
 - 원칙적으로 현 정원 및 조직 한도 내에서 조정
 - 협동조합 또는 지역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 및 정원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부 전담조직 설치
 - 사례 : 전북(협동조합 T/F, 팀장 : 민생일자리본부장), 경남(협동조합지원과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다.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 보조금 지원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 농업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시 생산자협동조합 등에 우선 지원하는 제도 정비
 - 사회복지업무,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협동조합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자체 사무위탁 관련 조례 정비
-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계약관련 특례를 부여하여 협동조합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지자체 차원의 조달정책 추진)
 -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수의계약 조건 완화
 - 자치단체와의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 협동조합 참여기회 확대와 참여 조건 완화
 - ※ 공공시설 관리 등에 협동조합이 진출할 경우 일반 용역업체에 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큼
 - 일반 용역업체는 자신의 수익률 보전을 위하여 청소인부의 월급을 적게 주나(월 70-80만원) 협동조합의 경우 청소인부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음(예상 금액 약 100-120만원)

2.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가.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필요성

- 정부주도형이 아닌 지역사회 주도형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 정부주도형 사회적기업 육성과는 다른 지역사회 주도형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
 - 직접지원을 수단으로 한 정부주도성을 탈피하고 자치와 자립,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스스로 친화적 환경을 조성

-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업종별 협동조합 연대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 인적자원 개발,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시장 형성, 사회적 투자 유치, 기부문화 확산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참여형 협동조합을 활성화
 -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협동조합간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을 규정

나. 사례 : 강원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2007년 이후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내 사회적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
 - ‘11년 말 (예비)사회적기업 68개, 마을기업 44개, 6개 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15개, 광역자활센터 1개, 생활협동조합 5개 등이 존재
-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의존성 문제와 지속가능성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
 - 고용유지 곤란, 운영 및 경험부족,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수익창출 곤란 등
 - 강원도의 경우 도내 소비시장, 특히 윤리적 소비시장 여건이 취약하고 저부가가치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업체당 매출액이 매우 낮음
-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자원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주도형’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 제기
- 현재 도내에 7개 업종(간) 네트워크와 5개 지역네트워크가 조직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중(이강익, 2012 : 92)

<표 4-14> 강원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현황(2011년 12월)

	명칭	창립연도	소속단체	(예비)사회적기업수
업종(간) 네트워크	강원푸르미연합회(청소네트워크)	2002	14	9
	강원도재활용네트워크	2000	8	4
	강원도주거복지네트워크	2002	15	1
	강원도돌봄사회적기업네트워크	2011	4	4
	강원도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네트워크(준)	2011	10	6
	횡성친환경가공생산자연연합회	2009	12	3
	춘천로컬푸드네트워크(준)	2011	14	6
	7개		77	33
지역 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03	19	6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09	15	6
	횡성사회적기업협의회	2011	6	6
	강릉사회적기업협의회	2011	11	11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2009	38	36
	5개		89	65

다.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자원들(정보, 금융, 설비,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결망”으로 정의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의의(이강익, 2012 : 95)
 -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크는 외부의 지식과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조직의 다양한 역량들을 상호 연계시켜 혁신 공유에 기여
 - 네트워크는 개별 조직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규모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큰 시장에 공동으로 참여
 - 특히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협동, 평등, 연대 등의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어 고용안정을

중시하고 타 기업과의 장기적인 사업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

<표 4-15>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5가지 형태

유형	정의	특징	거버넌스
수평적 연계 (업종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을 합리화하고, 공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과 기회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출자 - 비용과 위험의 상호공제 - 대량수요처 공급을 위한 공동대응(공동입찰) - 원재료의 공동구매	위원회, 협회, 법인격을 갖춘 거버넌스
수직적 연계 (업종간)	부문별 전문화와 전체 생산연결망을 바탕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 속에서 만들어진 기업간 네트워크	- 생산단위 간 전문화 - 생산-유통의 연결망 구축 - 다수 기업들에 의해 활용되는 네트워크	조정역할을 하는 파트너십 거버넌스
금융적 연계	금융지원 네트워크	- 신용의 공급 - 일시·장기 지분소유 - 기업역량강화를 위한 금융및기술지원 서비스	사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독립기구
고용연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 네트워크 내 타기업의실직자를 우선 채용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지역)	전략적 조정 네트워크	- 외적 대표성과 로비 - 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 - 네트워크 간 시너지창출 - 전체적인 공동서비스 - 기본적인 전략적 의사결정	선거체계와 경영체계를 갖춘 거버넌스

출처: 이강익(2012), p.96에서 재인용

라.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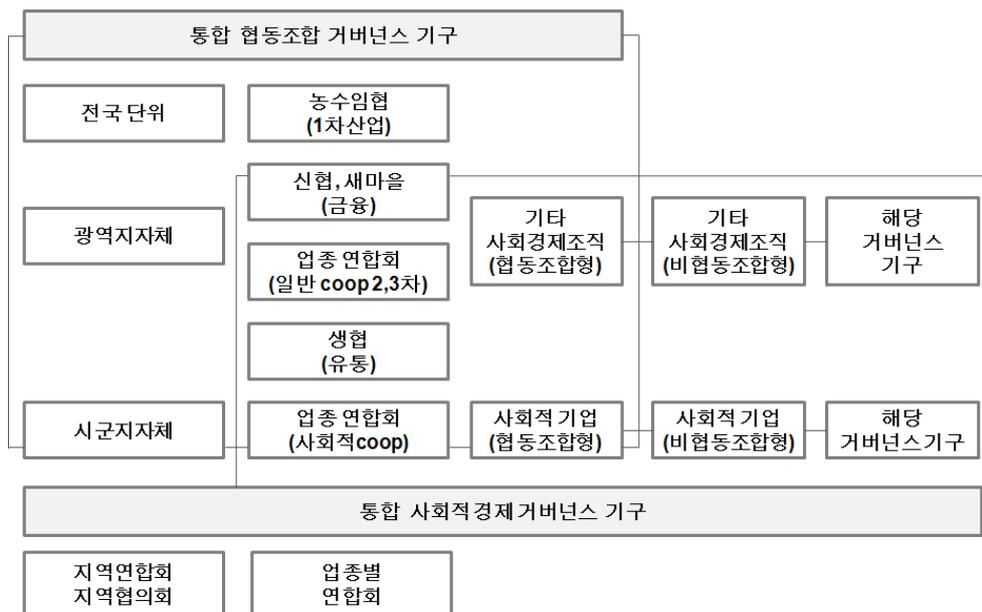
-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또는 출연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협동조합 네트워크에 위탁(사례 : 서울시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역공동체법인에 위탁)
-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사례 : 원주

시의 경우 로컬푸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푸드조례」 제정)

-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민간 위탁 등 민관협력 추진(사례 : 원주시 경우 민관협력으로 「학교급식센터」 추진)

- 공동입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기준 등을 완화
- 포럼, 홍보, 교육, 이벤트 개최 등 협동조합간 협동이 정착되고 이업종(異業種)간 협동으로 발전하도록 자치단체가 간접적 지원 제공
 -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협동조합연합체, 업종별 협동조합연합체, 지역공동체사업협의회(연합체) 등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를 구축

[그림 4-14]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조



출처 : 김기태(2012)

3. 협동조합의 내부 역량강화 방안

가.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종류

- 시민단체·공동체 교육
 -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별 단체의 핵심리더, 활동가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
 - 주요내용 : 협동조합의 가치와 장점, 사업영역, 사업방식, 공동체 복원 등
- 공무원 실무교육
 - 공무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기존 지방행정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하거나 공조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에 적용
 - 주요내용 : 협동조합의 이해, 사업영역 발굴 등
- 협동조합 정책리더 양성교육
 - 협동조합 연구자와 지도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협동조합 연구자와 지도자들 간의 지적 교류와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장(場)을 마련
 - 사례 :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구성·운영

2) 시도별 협동조합 지역교육기관(아카데미·포럼 등) 설립·운영

- 자치단체가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관련 지역교육기관을 설립·운영
 -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기존 공공 교육기관, 시도 연구원 등에 부설로 설치
 -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 주민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장(場)을 마련
 - 사례 : 충남(지역사회 아카데미 개설), 전북(협동조합 스쿨 개설)
 - ※ 충남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호서대 산학단과 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

지부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3) 사례 : 전북의 「협동조합 스쿨」

○ 목적

-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협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준비
- 지역현실에 입각한 협동조합 주체의 네트워킹과 민관협력체계의 토대 마련
- 협동조합을 위해 「자주·자립·자치」를 기본으로 과제를 스스로 도출하여 실천할 수 있는 협력적 기반역량 강화

○ 기본방향

-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공간 및 기회 제공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순환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협동조합 인재 육성
- 지역단위 협동조합 주체가 모여 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협동조합 스쿨 운영개요

- 운영조직 : 학교장(도지사), 운영위원회 : 행정부지사(위원장), 공무원, 학계, 업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
- 운영기간(기수별 7개 강좌) : 제1기(5~8월), 제2기(8~11월)
- 주요내용(7개 강좌) : ①협동조합의 기초, ②협동조합 기본이론(Ⅰ), ③협동조합 기본이론(Ⅱ), ④협동조합 관련 법규, ⑤국내외 성공실패 사례(Ⅰ), ⑥국내외 성공실패사례(Ⅱ), ⑦현장학습
- 학습방법: 강의+토론+사례연구+현장학습 병행
- 교육인원 : 50명
- 수강생 모집방법 : on-off 라인(시군, 공문, 도청 홈페이지, 우편)을 통한 공개모집, 신문보도, TV 자막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

- 수강대상 : 영세소상공인, 자활공동체, 예비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자, 도,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대학교 임직원, 학생 등

○ 사후관리

- 협동조합 교육이수자 수료증 제공 및 D/B 구축
- 지역별 교육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생 대표를 리더로 자치조직 구성 유도
- 교육 이수자에게는 협동조합 설립시 컨설팅 기회 우선 부여

나. 홍보·정보교류

1) 홍보활동 강화

-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친화적 문화조성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
 - 협동조합연합체의 공동신문 발행 지원
 - 홈페이지 구축
- 협동조합사업 공모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분위기 제고
 - 공모내용 : 협동조합 사업모델 공모 및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 법 시행전 활동가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 협동조합 사례연수 기획 등 추진
 - 궁극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도적 “스타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수범사례를 전파
- 각종 행사, 간담회 개최시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분야별 지원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

2) 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 협동조합은 물론 일반 주민, 지역공동체, 기업, 정부/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토대인 정보 플랫폼(Platform)을 구축·운영
- 정보시스템은 SNS와 연동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참여·공유·개방의 웹 2.0의 정신에 기반
- DB 대상 : 협동조합, 지역(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지역공동체 사업(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활동현황 등
- 주요기능
 - 지식 및 정보(사람, 사업, 프로그램 등) 제공 및 연결 기능
 - Social Funding(재능, 자원) 기능
 - 청원/격려/지원 기능 등

다. 전문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활성화

1) 협동조합의 경영성과 문제

- 협동조합의 전통적인 문제로 통제문제(control problem) 발생
 - 통제문제는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제한적이어서 시장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여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존재
- 협동조합의 과도한 영향비용문제(influence costs problem) 발생
 - 조합원들 그룹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듦

※ 캐나다 곡물농협: 경영혁신부족으로 인한 실패사례(이인우, 2012)

- 캐나다 서부 지역의 곡물 농협들은 1906년에 처음 설립된 이후 4개의 대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지난 2007년 6월에 외부자본의 적대적 매수로 영리회사로 전환되었음
 - 1930년대 중반 4개의 대형 곡물농협(UGG, AWP, MPE 및 SWP) 체제가 성립
 - 1950년대에 이 지역 곡물창고의 약 48%를 소유 운영하였고, 철도운송료 지원정책 등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 발전
- 운영시스템의 차이
 - 협동조합: 곡물창고의 지리적 분산, 철도운송료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전통적 유통 시스템
 - 민간회사들: 대형 곡물창고, 트럭 운송에 기초한 현대적 곡물유통시스템
-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구조개편 지체와 투자재원 부족
 - 철도 운송에 의존하던 지역 곡물 창고는 트럭운송 체계에 따른 대형 집하 시설의 네트워크로 편입될 수 있었음
 - 뒤늦게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대규모 투자와 자본금 부족은 협동조합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하였음

2) 대응방안

- 아이디어시장의 활성화
 - 미국 노스다코타 지역의 경우 농업관련 아이디어 발표회로 농업인과 정부관료, 조합경영인, 교수 등이 참여해서 사업과 경영, 농산물 가공,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한 성과와 경험을 발표
- 지역의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제휴관계를 형성
 - 지방자치단체가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영 리더십을 협동조합에 전파, 확산하기 위해 관련 부문간 제휴를 맺는 브로커(broker) 역할을 수행
- 관련 전문가 pool DB 구축 및 공개
 - 협동조합의 이사회 구성시 전문경영인이나 전문기술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농업협동조합법¹⁴⁾: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의 지역농협은 1명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음(법 제45조)

4.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이란 원래 ‘중개(仲介)’, 또는 ‘매개(媒介)’의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
 -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 등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incubator:보육기) 혹은 각종 자원(자금, 시설제공 등)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사업체의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물론 지역공동체사업들은 주민 주도의 소규모 생활비즈니스로서 경영자원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치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의 간접지원이 필요
 - 순수한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체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각종 경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크지만, 특별히 이를 지원해 줄 금융기관이나 컨설턴트가 부재
 - 교육·훈련, 창업 상담, 지역수요와 인적자원의 연결, 자금 중개, 인력 알선, 자치단체와 기업간 연결 등의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이 매우 중요

나. 민간 주도적 운영방식

- 협동조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통합 지원

14)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음

- 중간조직은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민사회의 재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역할을 분담
 - 지원센터는 지역의 역량이 큰 자치단체는 민간의 NGO 등의 주축이 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운영
 -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기관(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설치하며, 운영의 민간 위탁 또는 민간 전문가의 계약직 위촉 등을 활용

다.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

- 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직접 원스톱으로 해결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시켜주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구조로 설계
 - 자치단체 차원에서 센터 내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를 체결하여 해당 서비스를 위탁 처리
 - 센터는 상담창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전문 서비스는 해당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라.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본구상

- 설립 형태
 - 설치단위 : 기본적으로 시도 단위로 설치·운영하되, 협동조합이 다수 활성화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지원센터를 별도 설치
 - 설립방식 :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여 설립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 유관조직(예 : 지역상공회의소,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시도연구원 등)에 부설로 설치 가능

○ 조직 구성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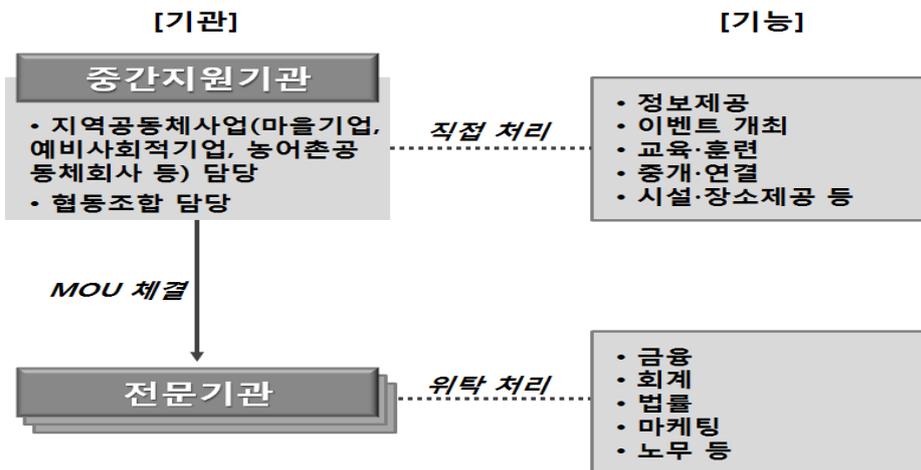
－ 서비스 기능

- 정보제공 및 컨설팅: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정보 제공, 협동조합 경영 컨설팅(법률, 회계, 마케팅 등) 등
- 교육·훈련: 협동조합 운영 관련 교육 훈련, 협동조합 예비창업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
- 이벤트 개최: 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협동조합 사업의 확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 지역사회에 밀착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 등
- 중개 및 연결: 조합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네트워킹 활동 지원 등
- 시설 및 장소제공: 소규모 협동조합 창업공간 제공이나 준비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 등(사례 : 원주의 경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주축인 밝음신협이 관련 시민모임, 원주한살림 매장, 원주 의료생협 소속 한의원 등에 초기에 장소를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

－ 운영방식 :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방식으로 기능 설계

－ 구성 : 교육 아카데미, 협동조합 연구센터, 경영관리 지원팀 등

[그림 4-15]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기능설계



마. 사례 : 전북 완주군 「협동조합 지원센터」 (현재 추진중)

○ 설립 필요성

-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 교육 및 학습, 정보제공 등 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광역단위의 통합적 거점기구 필요
- 전북은 이미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푸드, 두레농장, 사회적서비스사업 등 협동조합과 유사한 사례들이 활성화되어 있음
- 사회적 공동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운영중인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연계하여 협동조합 지원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

○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개요(안)

- 장소 : 구 전북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리모델링)
- 센터 설립기간 : 2012~2013년
- 사업규모 : 2,000㎡(연면적),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 사업범위 :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 일원
- 사업내용 : 협동조합 아카데미, 홍보센터, 통합지원센터 등
 - 협동조합 아카데미 : 교육관, 세미나실, 커리큘럼 개설 운영
 - 홍보센터 : 홍보전시관, 미디어영상관, 자료관, 콘텐츠 기획·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등
 - 통합지원센터 :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 실무지원, 사후관리(사무국, 부대시설) 등
- 2012년까지는 기존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협동조합 홍보와 교육을 전담할 추진기구를 운영

5.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자금지원 방안

가.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재정지원 동향

-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 실패를 용인하며, 손실을 분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펀드가 필수적임
 -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기적의 이면에는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노동인민금고)이 존재
 - 특히 이중 협동조합간 협동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원활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협동조합은행이 필수적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프로모션 펀드 조성 및 각종 기금 지원, 세금혜택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 ※ 이탈리아 헌법 45조에 육성근거, 바세법(1954)에 잉여금을 조합에 재투자시 세금면제 등 제도 운영
 - 협동조합 이념에 맞는 조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지원 추진
 - ※ 조합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사회적 평등 기여 모델, 사회적 자본 형성 등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개별 단위조합 수익의 일정비율(이태리: 3%, 원주 5%)을 “연합회 펀드”로 이전하여 기금을 조성
 - 폐업 협동조합의 새로운 조합 결성 및 전환 지원, 소규모 협동조합의 성장 지원 등

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관련 재정지원방안

1) 필요성 및 방향

- 지자체 차원에서 현행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창업, 사업화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대사업 수준에서 소규모 대출이나 조합원간 소규모 부조만 가능
- 현재 협동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을 직접 적립해서 조합이나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출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우선적으로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기금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안을 모색
- 지자체의 자금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임
 - 1안: 지역협동조합육성기금의 조성
 - 2안: 저리의 용자대출제도 알선

2) 1안: 지역협동조합육성기금의 조성

- 지역협동조합육성기금은 협동조합의 창업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개별 단위조합 수익의 일정비율(이태리: 3%, 원주 5%)을 “연합회 펀드”로 이전하여 기금을 조성
 - (1-A안)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지역협동조합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 기존 상호금융기관들의 서민 소매금융의 한계, 낮은 예대율, 경영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협동조합이 기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들 조합의 요구 때문이며, 생협의 경우는 기금 조성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들 기관의 협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1-B안) 협동조합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조합원 출자금

을 적립하고, 조합원이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

- 즉,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민간기금 조성¹⁵⁾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출자금과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각 계를 아우르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 자체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 지역내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
 - ※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시장에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을 마련¹⁶⁾

3) 2안: 저리의 융자 대출제도 일선

- 협동조합에 대한 기금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또다른 방안으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일부를 선정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특별 정책융자를 받도록 함
- 가능한 재원
 - 미소금융재단: 2008년 3월 출범하였으며 대출대상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을 타겟으로 하였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조건: 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내, 4년, 연리 3%이내 또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5,000만원, 4년, 연리 7% 등 최저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

15) 2009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부총액은 3조4천6백억원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10배이상 증가(양용희, 2011)

16) 사회적투자시장(Social Investment Market)이란 ①정부가 보증을 하고 ②민간기관 또는 사회투자기관이 대출을 해서 ③협동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④대출금을 갚는 이른바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일종임

- 지역 새마을금고의 서민대출에 대한 홍보

6. 시도별 협동조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 목적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지역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동조합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간접지원방안을 마련
 -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협동조합주체, 기업, 전문가집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상호학습과정(mutual learning process)으로 활용
 - ※ 국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기본법 제11조제1항)
- 활용 : 시도 및 시군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지원방향 정립
-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근거한 협동조합 지원의 비전과 전략, 지역여건에 맞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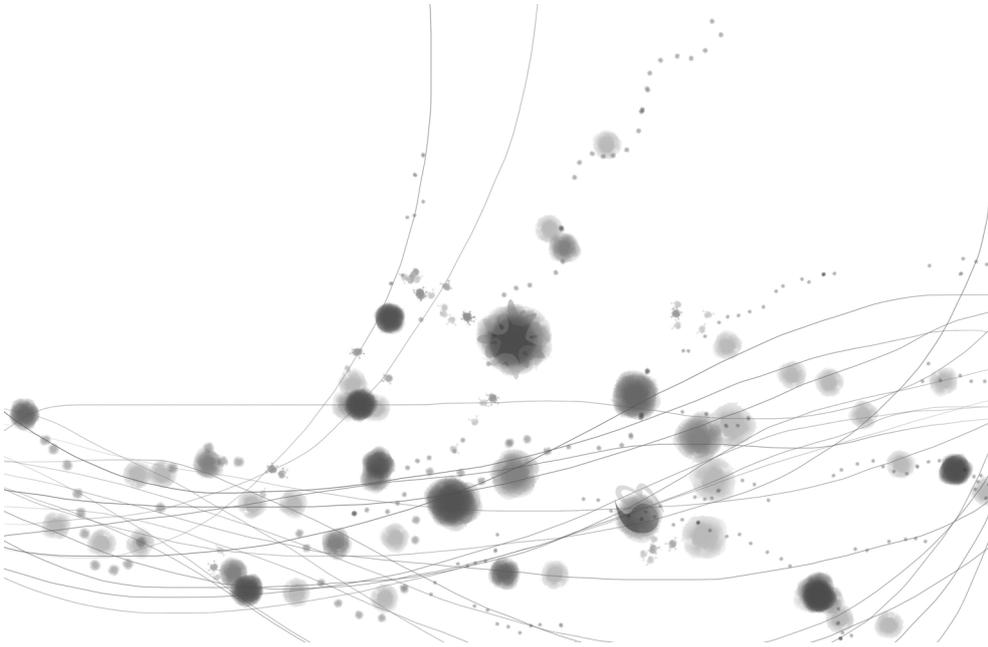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경창수, 2012,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토론문 I”, 지역재단 제20차 지역 리더포럼
- 권순실, 2011,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생협평론 겨울호(5호)
- 기획재정부, 2012.2.8.,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 김기태, 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과 과제“,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지역의 역할찾기」, 전라북도 협동조합 1차 포럼
- 김선기 외, 2012,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오 저, 2012, 「몬드라곤의 기적(행복한 고용을 위한 성장)」, 역사비평
- 김수환, 2009, 「협동조합 해외 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영철, 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 김종한·류장수, 2011,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부산지역 협동조합 실태분석」, 정인
- 김태열 외, 2010, 「협동조합도시 볼로냐를 가다」, 그물코
- 노대명, 2007,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 경제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 니시카와 요시카이 외, 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사례편」, 진영환 외 역, 한울
- 마쓰오 다다스 외, 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전략편」, 진영환 외 역, 한울
- 박범용,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해설”, 「자치행정」
- 박제선, 2011,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생협평론」, 겨울호(5호)
- 송두범·김종수, 2012,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충남리포트 제66호

- 스테파노 자마니, 베라 자마니, 2009,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 기업」, 송성호 역, 2012,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북돋움
- 신명호, 2011,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 양용희, 201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 및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사회적기업연구」, 4(1): 3-25
- 우영균, 2009, “이종(異種) 협동조합간 연대에 의한 지역공동체운동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27(1): 29-53
- 윌리엄 F. 화이트, 캐서링 K. 화이트 저, 김성오 역, 2012,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역사비평
- 유정규, 2011,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과제”,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 이인우, 2012, “캐나다 곡물농협의 실패 사례”, NHERI 리포트 제175호
- 임정협, 2012,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기념 토론회」, 동아시아미래재단·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전라북도, 2012, “협동조합 지원 추진전략”
- 전성균, 2008, 「최신 협동조합론」, 한국학술정보
-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원주 지역 협동조합 운동을 사례로 -”, 「시민사회와NGO」, 제6권 제1호
- 정원각, 2009, “협동조합운동의 개념과 의미·역사·현황 그리고 각국의 사례”, YMCA간사학교
- 조병민, 2011,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의료생협”, 「생협평론」 겨울호(5호)
- 지역발전위원회, 2012, 「민간자율 지역공동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 최덕천, 2011, “사회적 경제블러과 지역사회협동농업: 원주지역에서의 유기농업과 의료생협의 융합사례”, 「한국협동조합연구」, 29(3): 1-26
- 최용주, 2009, “사회적 경제의 도래와 협동조합운동: 유럽과 캐나다의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학회 추계학술대회
- 최진혁, 2011,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어제, 오늘, 내일”, 「농정연구센터 논집」 통권37호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한국 협동조합섹터의 발전방향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가능성」, 함께일하는 재단
- 행정안전부, 2011, 「2010 행정안전백서」
- 황영모, 2012,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준비와 실천”, Issue Briefing, 「전북발전」, 74호
- Borzaga, C. and Defourny, J., ed.,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New York: Routledge
- Defourny, J. and Pestoff, V.(eds), 2008, Images and Concepts of the Third Sector in Europe, European Research Network, WP no. 08/02.
- Doherty, B. et. al., 2009, Management for Social Enterprise, London: Sage Publications
- Pearce, J., 2003,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부 록



부록 1. 중앙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

<표 1>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규칙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1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규칙	2011.3.17	2011.3.17	일부개정	감사원
2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2011.12.19	2011.12.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2012.1.4	2012.1.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2010.6.7	2010.6.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5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2005.2.14	2005.2.14	타법개정	국가보훈처
6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2010.8.13	2010.8.13	타법개정	국방부
7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2011.10.4	2011.10.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8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2012.4.12	2012.4.1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9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2012.2.3	2012.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2011.10.12	2011.10.12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
11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09.12.31	2009.12.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2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법무부령	2010.5.31	2010.5.31	일부개정	법무부
13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2006.5.25	2006.5.25	제정	대법원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14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한규칙	총리령	2004.4.2	2004.4.2	일부개정	법제처
15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2011.9.1	2011.9.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6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령	2011.12.15	2011.12.1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17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외교통상부령	2004.12.13	2004.12.13	일부개정	외교통상부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11.12.23	2011.12.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령	2012.2.7	2012.2.7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20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2010.5.12	2010.5.12	일부개정	통일부
2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2011.10.28	2011.10.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2	헌법재판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2003.12.29	2003.12.29	제정	헌법재판소
23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2010.3.22	2010.5.5	일부개정	환경부

부록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등록대장

[그림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시행령 제2호 서식)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단체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4.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관(시·도지사) 인	

<표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비고

부록 3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증 및 등록대장

[그림 2] 사회적 협동조합등록증(시행령 제2호 서식)

제	호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p> <p>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시행령 제1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p>					
월	일	년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표 3>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대장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비고